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PSPD Judiciary Watch Center

목차

책을 내면서 | 3~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문 | 10~24

왜 우리는 로스쿨을 지지하는가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25~116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안상수 의원께

27~34 |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교수)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권철현 의원께

36~42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최순영 의원께

44~49 |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

4.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종인 의원께

52~55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교수)

5.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주호영 의원께

56~61 | 김제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

6.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순형 의원께

62~67 | 김종철 (연세대 교수)

7.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주성영 의원께

68~73 |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

8.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정봉주 의원께

74~81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9.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유기홍 의원께

83~88▶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 교수)

10.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께

89~98▶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11.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최순영 의원께

100~110▶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교수)

1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최순영 의원께

111~116▶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

답신 117~137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에필로그 138~147 로스쿨지지자의 편지에 대한 네티즌의반응과 재반론

박경신(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자료 148~172

1. 「법학전문대학원운영·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의견서 / 2005.11.03.)

149~1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제 시행

(법조인양성 및 충원제도 공청회 / 2004.4.26.)

164~17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책을 내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0년 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법과대학원 설치안이 법학교육의 개혁방안으로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법인력의 배출제도와 구조기능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학원 수준에서 법학교육을 받아 전문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법과대학원이란 새로운 조직을 통하여 기존의 법학교육 체제가 앓고 있었던 교수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1995년 한 신문사와 함께 했던 10회 연재 ‘사법개혁 공동기획’의 내용을 보충해서 1996년 1월에 발행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197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시 ‘법과대학원’이라 불렀던 것은 근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불리는 ‘로스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연대는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세상 변화를 모르거나 아니면 틀린 주장을 10년 동안이나 고수하는 고집불통일까요?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10년 전 저희뿐만 아니라 당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여러 전문가들이 주창했던 내용이었지만, 법조계의 반발로 좌절되었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중심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이 건의단계까지 갔지만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반발로 또 좌절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나 법조계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반발하면서 내놓은 타협안이라는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조금씩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300명에서 500명, 그리고 지금의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한국의 법률가 양성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니 ‘양성’과 ‘교육’ 시스템이 있거나 한 것일까요? 사회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법률가는 충분히 배출되도록 바뀌었을까요?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이라는 틀에서 파생되는 여러 병폐들은 충분히 치유되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도입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을 반대하던 이들이 내세웠던 수많은 주장과 타협책들이 실패로 귀결된 이상, 로스쿨 제도 도입은 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게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노력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그 바깥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도 토론자로,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다행히 참여연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대변화를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을 안 법조계 일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개혁적 사고를 가진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에 로스쿨 제도 도입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부터는 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범(凡)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결과도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 2월과 3월, 국회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이지만 당시 국회 교육위원들의 성실한 심의와 진지한 자세는,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관련 법률안에 담긴 아쉬운 부분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국회가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희망은 금세 사그라졌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일부가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자, 나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왔다고 공언하며,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두어 달에 걸친 국회 상임위에서의 심의결과를 단숨에 무시합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의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합니다.

국회가 법률가 양성 제도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시 한 번 정성을 다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야 할 국회의원들은 방문해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에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 1명을 정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이름을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라 이름 붙였습니다. 로스쿨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적극적 제목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하루 또는 사나흘 간격으로 12월 15일까지 12편의 편지를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 책은 그 12편의 편지를 묶은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경북대 법대에 재직 중인 김창록 교수께서 안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께 보낸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입니다. 김창록 교수는 일본의 사법개혁 추진현황을 수 년째 추적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보다 수 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실패로 규정하며 한국에서의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짚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건국대 법대에 재직 중인 한상희 교수께서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께 보낸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입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고려대 법대에 재직 중인 박경신 교수께서 최순영 국회의원(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께 보낸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박경신 교수는 이 편지에서 로스쿨이야말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법률가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편지는 서강대 법대에 재직 중인 임지봉 교수께서 임종인 국회의원(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께 보낸 “확실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입니다. 이 글에서 임지봉 교수는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해를 짚어보고 법률가 양성의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고려대 법대에 재직 중인 김제완 교수께서 주호영 국회의원(교육위 소속, 한나라당)께 보낸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입니다. 김제완 교수는 이 편지에서 로스쿨 입시경쟁이 생길 것이라거나 로스쿨로는 전문성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로스쿨 반대 이유를 비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는 연세대 법대에 재직 중인 김종철 교수께서 조순형 국회의원(법사위 소속, 민주당)께 보낸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입니다. 김종철 교수는 이 편지에서 학부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이 로스쿨 교육의 장점이자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변화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께서 주성영 국회의원(법사위 소속, 한나라당)께 보낸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입니다. 박경신 교수는 이 편지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 증원을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덟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께서 정봉주 국회의원(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께 보낸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입니다. 한상희 교수는 이 편지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가의 양성은 대학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법률가 양성 제도임을 짚었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는 한동대 법대에 재직 중인 이국운 교수께서 유기홍 국회의원(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께 보낸,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입니다. 이국운 교수는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10년 이상 반복된 이유를 짚고,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12년이나 걸린 논의를 매듭지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열 번째 편지부터 열두 번째 편지는, 애초 기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편지는 박경신 교수께서 쓴 세 번째의 지정 수신자인 최순영 의원이 보내온 답신을 읽고 더 쓴 글들입니다.

열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께서 최순영 의원을 대신하여 노회찬 국회의원(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께 보낸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

닐 수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최순영 의원과 같은 당에 소속된 노회찬 의원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한상희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로스쿨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오류를 짚어주고, 법률가 양성을 위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편지는 김창록 교수께서 최순영 의원에게 보낸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입니다. 최순영 의원께서 보낸 답신을 읽은 김창록 교수는 최 의원도 지적한 문제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로스쿨 제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마지막인 열두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께서 최순영 의원에게 보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입니다. 박경신 교수는 이 편지에서 로스쿨 제도는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 제도라는 최순영 의원의 답장에 담긴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12편의 편지는 지정 수신자로 정해진 분들께 우편으로 보냈고, 다른 국회 교육위원과 법사위원들께도 한 편 한 편 발행될 때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인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도 게시했고, 한겨레신문의 웹사이트인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도 모두 게시되어 누리꾼들도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수준에서 다룬 것들도 있고, 정책의견서와 보고서, 공청회 발제문도 아주 많습니다. 참여연대의 이 편지들이 그저 자료의 숫자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소임을 충분히 다했는지 돌아보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그리고 비록 국회의원을 수신자로 한 편지였지만, 이 편지들은 시민들도 로스쿨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 모음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 같은 요구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법조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이미 늦어버린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에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서문

왜 우리는 로스쿨을 지지하는가?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교수)

저희들은 스스로를 ‘로스쿨 지지자’라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사법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개혁의 출발점이자 요체가 바로 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이라는 이 민주적 법치의 이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로스쿨 제도야말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로스쿨이란?

실제 그동안 무수한 논의들을 통하여 로스쿨 제도가 어떤 것인가는 잘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같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법률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로스쿨은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개설되어 학부에서 법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법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고 그중 일정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려져 왔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인식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단순히 법률교육단위가 종래의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정으로 바뀐 것 정도로만 이해되는 것은 약간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법을 운용할 주체인 법률가를 누가 어떻게 양성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이 법률가 양성의 주체를 종래의 국가에서부터 시민사회 혹은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으로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로스쿨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 서너 나라에서만 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법률가를 양성할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채용해 왔던 제도는 정규적인 법학교육과는 관계없이 사법시험이라는 암기식의 시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법학교육이야 받았건 말았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법이란 그 슬한 인간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은 산전수전을 겪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간사를 이해하고 법의 정신을 곱씹어 새겨낼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법시험 제도는 인간 세상을 경험하기도 전의 어린 학생들을 고시촌에 가두어 놓고 법조문만 외우게 만듭니다. 어렵사리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수용되어 국가가 설정한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은 **네 번째의 편지¹⁾**에서 자세히 거론되겠습니다만, 오로지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법률가만 양성되는 셈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1)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본 묶음집 47쪽

지난 날 권위주의 시절, 악법도 법인 양 인권탄압적인 판결문들이 하등의 고쳐도 없이 판에 박힌 듯 양산될 수 있었음도 보기 나름으로는 이러한 국가중심적인 법률가 양성체제에 기인한 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이런 획일적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체의 경험이 통용되었던 국가-일본의 구제도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더러 우리 법의 모태가 되는 독일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실제 독일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국가가 관장하고, 법률가의 양성과정에도 국가가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런 제도를 거의 대학에 일임하였을 뿐 아니라, 애당초부터 법학교육을 법률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못 박고 있었고 그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대학이 주도하여 법률가를 양성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외 다른 나라의 경우는 부연을 요하지 않습니다. 판검사와 같은 ‘공무원’의 임용과정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민간인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철저하게 대학에 일임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서 학사과정에다 1년의 석사과정을 추가하여 요구합니다. 일종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셈이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와 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는 법률가가 되는 자격은 정규의 법학교육, 그것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그 본질인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천차만별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저런 법률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가들

을 양성해 냅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로스쿨 제도는 공공성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제기하고 있음은 이 점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오면 그 판결과 다른 법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제도와는 달리, 그 판결을 공격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거나 심지어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기도 하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을 키워 내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왜 사법개혁의 대표격이 되는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로스쿨 논의의 핵심은 학제의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의 양성주체를 국가로 단일화하지 않고 각 대학으로 다원화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찬 변호사를 양성하고, 어떤 대학은 기업이나 통상에 관한 법률문제에 전념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지향과 사고방식을 가진 법률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대변해 낼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인 셈입니다.

1994년 이래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사법개혁의 논의를 시민사회가 주도할 때 대부분의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YS정부까지도 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률가는 더 이상 국가권력의 대리인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법시험의 준비기관으로 전락한 법학교육의 현실을 한탄하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도 산입되었습니다. 또는 국제화·세계화시대 혹은 남북통일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타산도 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의 운용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도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어야 하며, 법률가도 국가에 고용된 관료가 아니라 고객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 사법개혁의 대표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열한 번째의 편지**²⁾에서 김창록 교수가 자세히 지적해내듯, 우리 사법체계의 구조를 바꾸어내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사법에서부터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더 나아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의 의지를 읽어내고 이를 법률적으로 가공할 줄 아는 법률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은 모든 사법개혁이 첫 단추를 꿰는 시발점으로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왜 대학원과정인가?

이 질문은 참으로 많은 반발과 이견을 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법률가 양성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지루하더라도 약간의 배경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가 양성과정은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단계와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 전문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한 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자는 법학교육의 형태와 법실무수습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제국의 경우 법학교육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법실무수습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변호사단체들이 마련한 별도의 훈련기관에서 실시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나라는 법학교육만 마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어떤 나라는 법학교육과 법실무수습을 모두 마쳐야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두 과정을 다 이수해야만 ‘온전한’ 변호사로 대접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2)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김창록, 본 묶음집 100쪽

입니다. 그러나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는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대체로 양자를 구분하는 제도에서는 법학 교육은 대학의 학사과정에서(물론 프랑스는 거의 석사과정에서 실시합니다만)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실무에 관한 훈련은 대학을 떠나 실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도제식 훈련과정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등을 필두로 도제식 훈련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법률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결합하여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통합하고 이를 점차 대학원과정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교육제도와 다른 나라의 그것은, 로스쿨이나 아니냐의 구분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론교육과 법률실무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가 아니면 유럽처럼 분리하여 대학과 실무 법조계가 분업의 체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학원과정이었느냐고요? 그 이유는 대학 학부교육에 대한 미국식 특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학부과정에서는 별다른 전공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지 않고 소위 교양교육 즉 Liberal Arts라고 하는 문학이나 철학, 역사 등의 기초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학전문대학원(소위 MBA), 혹은 로스쿨 같은 대학원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미국의 법제에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학부과정을 교양교육과정으로 성격지우고 있는 미국의 교육제도에 특유한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이런 식의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 대학들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적으로 실험대학 체계를 넘어서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학부제를 도입하고 전공간의 벽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교육에 대한 비중을 대폭적으로 낮추고 학제간의 탐구교육이나 다양한 지식의 습득에 비중을 두는 체제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구조의 변화는 의학전문대학원, MBA과정, 건축전문대학원 등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전문직업교육체제의 구축사업으로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률가가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자리매김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혹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체계상 그 양성체계는 어쩔 수 없이 대학원과정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법학교육이 반드시 대학원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학교육의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인식과 해석의 능력이 먼저 갖추어지고 난 연후에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본다면, **여덟 번째 편지**³⁾에서 밝히고 있듯, 적어도 우리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는 대학원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교양교육이 유럽에서처럼 고교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법률전문가양성교육이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입시 등으로 파행의 극단을 달리는 우리의 고교교육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교육혁신의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육당국이 추진해 온 교육과정의 개편방식을 두고 보더라도 이런 유럽식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상희, 본 묶음집 74쪽

법제의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흔히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판택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참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선 교육제도의 문제만 보더라도 판택텐 체계는 법률이론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식이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미루어놓더라도, 그런 교육이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이지 아니라 학부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론교육에 관한 한 그것이 학부에서 이루어지건 대학원과정에서 이루어지건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택텐 체계는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구성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법의 내용을 규율대상이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나누어 총론과 각론의 방식으로 편제하고, 일반적 규율로부터 개별적 규율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체계를 교육시키는 데는 개별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교육보다는 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법학자를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법실무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현재의 사법연수원이 법학이론을 가르치는데 치중하지 않고 있듯, 법률가의 양성 과정으로서의 법학교육은 언제나 실무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하나의 생각으로 획일화된 법률가가 아니라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법적용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판택텐 체계가 추구하는 법의 총체적 통일성 내지는 단일성이라는 이념 자체가 현대의 시대

적 요청과 모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 로마법을 연구하고 그것이 판택텐 체계로 귀결되는 과정 자체가 모든 사회를 하나의 규율로 묶어 둘 수 있는 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이런 판택텐 체계를 고집하는 발상은 그 자체 구태의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그 발상국인 독일에서조차 20세기 초반부터 법만능주의니 법순결주의니 하는 비판이 줄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법학교육개혁이 이루어져 법이론과 실무를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예컨대, Übung 등)이 개발, 시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다층성의 시대에 법의 무흠결적 완결성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사가 하나의 틀 속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겠지요.

더구나 이미 한 국가의 단일법만으로 운영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제화·세계화의 추세가 외국법의 국내 적용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약이나 MOU, 혹은 중재나 조정 등과 같이 법이 아닌 다른 규범이나 제도들이 법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통상이나 무역과 같은 경제영역은 이미 이런 대체 규범들이 국가법을 추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여섯 번째의 편지**⁴⁾에서 김종철 교수가 지적하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이 제대로 구현되어 우리 법률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우리 법제가 판택텐 체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더구나 실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법률가 양성제도에 있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정법조인구는 법조양성방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표제를 내걸고 사법개혁의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1995년 3월, 대한변협이 “법조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

4)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본 묶음집 62쪽

는 이름으로 제시한 의견중의 하나입니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의 숫자는 어떤 방식으로건 늘여서는 아니된다는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대체로 로스쿨에 대하여 법조인들이 제기하는 반대론의 대부분은 이런 기득권옹호론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실패론을 비롯한 상당수의 회의론 역시 이런 기득권에서 파생됩니다.

실제 로스쿨 제도의 성공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그 첫째 조건이라면 둘째 조건은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변호사 숫자를 지금처럼 철저하게 제한하고자 한다면 둘째의 조건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가능성 자체도 위태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들어 실패한 제도라고 강변하는 것도 이런 구조에서입니다. **첫 번째의 편지**⁵⁾에서 김창록 교수가 조목조목 그 주장의 허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의 경우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정원을 미리 정해놓는 바람에 불합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따라서 로스쿨의 교육과정 자체도 그에 따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로스쿨 제도가 실패하였다고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는 의례히 변호사 숫자의 증가라는 부대조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처럼 국가가 나서서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옹호하는 전대미문의 구조는 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혹은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 변호사 숫자를 늘여야 한다는 논의-물론 이도 타당한 주장입니다만-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민주적 법치라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하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독점적 기득권을 과감히 해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본 묶음집 27쪽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여야 할 이유를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아홉 번째의 편지**⁶⁾에서 이국운 교수가 충분히 한탄하고 있듯, 이런 내용들은 이미 10년 전에 제시되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론과 그 재반론, 보충의견 심지어 관련 자료들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탕, 삼탕의 글이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연쩍을 정도입니다.

실제 1995년 정부가 중심이 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이를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이라는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6년제안, 법과대학원(즉 로스쿨)설치안, 2+4년제안, 4+2년제안, 3+3년제안, 4+3년제안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법과대학 5년제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사법연수원 2년과 결합하여 7년제안을 제시한 바 있고, 심한 경우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2년 수료+5년제 법과대학안까지 검토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로스쿨설치안의 경우 국립대학원안, 설립인가제안, 나아가 미국식의 자유설립안까지 가세하여 최소한 10개 이상의 대안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서울대의 홍준형 교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안 \ 목표		사법 인력의 배출확대	법학 교육의 정상화	법학 교육의 전문성제고	법조 실무교육 강화	법학 교육 비용(-)
법과대학연장안	① 2+4	1 (본과 수료 후 1차면제)	1	1	1	3
	② 4+2(a)	1 (학부 수료후)	1	1	1	3

6)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국운, 본 묶음집 83쪽

		법무사 등 자격)				
	③ 4+2(b)	⁴ (대폭증원)	3	2	2	3
	④ 5+(2) 대법원안	² (점진적 증원)	2	1	3	2
	⑤ 2+5	⁴ (대폭증원)	4	1	3	4
법과대학원설치안	⑥ 4+3(a) 국립제	⁴ (대폭증원)	2	4	3	3
	⑦ 4+3(b) 인가제	⁴ (대폭증원)	학부폐지 3 학부존치 4	4	2	4
	⑧ 3+3 국립/인가	⁴ (대폭증원)	국립 2 인가제: 학부폐지 2 학부존치 3	3	국립 3 인가제 2	3
기존 법과대학제 유지안	⑨ 4+(2)	⁰ (변동없음)	0	0	2	0

(각 수치는 상대적 효과를 의미하며 클수록 효과적임)

복잡하게 이런 도표까지 그린 것은 이 정도로 많은 논의와 평가 작업을 거쳤음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 하나하나의 주장과 대안들은 나름의 상황인식과 문제의식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다른 대안과 토론과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당시부터 이런 논의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그 대안들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로스쿨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한계, 문제점들을 거의 대부분 짚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반론과 재반론의 변증법적 논의방식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의 대안은 로스쿨 제도이며 그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법조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을 둘

러싸고 벌인 논의들이나 같은 해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방안 역시 이런 논의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기존의 안을 가지고 기존의 찬반양론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이 검증작업을 한 셈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이 논의들을 통해 「학사후 법학교육」이라는 일종의 절충형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이 「학사후 법학교육」제도의 모형을 가져다가 밑줄까지 쳐 가면서 공부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사법개혁의 논의과정은 이런 10여년간의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증하고 그 결과로 로스쿨 제도가 최선임을 새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으니 새로이 TFT를 구성한다, 연구반을 일본에 파견한다 등등의 법석을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된 반론이나 검토점은 이미 10년 전의 것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에 관한 자료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또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였던 것을 차용하여 쓴 것에 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일종의 타산지석의 격은 될지언정 새로운 논의점을 던져주지는 못 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두 번째**7), **세 번째**8), **여섯 번째**9), **그리고 열 번째 편지**10)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듯 우리는 이미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의 모색작업을 끝내었습니다. 더러 그 제도의 문제점이라 비판되었던 부분들은 이미 인가심사기준안이나 적성시험제도안, 혹은 교육과정개발 등의 틀을 통해 거의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남은 것은 **일곱 번째의 편지**11)가 그토록 애절하게 요청하

7)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본 묶음집 36쪽

8)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본 묶음집 44쪽

9)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중철, 본 묶음집 62쪽

10)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한상희, 본 묶음집 89쪽

듯 이에 대한 정치적 결정 뿐입니다.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해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자적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현재 제기된 로스쿨안은

결코 지고지선의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최종의 목표인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그 로스쿨을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로스쿨법안이나 그 부수 제도 안들은 더욱 불완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은 사법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국민의 사법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성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법개혁의 목표를 위하여 혹은 국민의 사법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에 맞추어 우리의 목표에 맞추어 변경하고 개선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왜곡하여 후자로서 전자를 부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허위담론들입니다.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고정시킨 채 로스쿨 제도의 왜곡가능성을 거론한다든지, 교육비 분담이라는 전사회적 의제를 생략한 채 고비용의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던지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3년의 교육기간동안 얼마나 배우겠느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억지에 가깝습니다. 고시낭인을 없애자는 주장에 로스쿨 낭인이라는 신조어로 대응하는 일부의 논의구도는 오히려 사법개혁 전반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로스쿨 지지자를 자칭하는 저희들은 이러한 주장 하나하나를 들어 설명과 해명과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그 형식이야 특정한 국회의원을 거론하여 그에게 호소하고 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진솔한 심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이야기

11)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본 묶음집 68쪽

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 위에 로스쿨 제도가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되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 안상수 의원께
27~34 | 김창록 (경북대 교수)
2.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 권철현 의원께
36~42 | 한상희 (건국대 교수)
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 최순영 의원께
44~49 | 박경신 (고려대 교수)
4.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 임종인 의원께
52~55 | 임지봉 (서강대 교수)
5.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 주호영 의원께
56~61 | 김재완 (고려대 교수)
6.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 조순형 의원께
62~67 | 김종철 (연세대 교수)
7.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 주성영 의원께
68~73 | 박경신 (고려대 교수)
8.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 정봉주 의원께
74~81 | 한상희 (건국대 교수)
9.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 유기홍 의원께
83~88 | 이국운 (한동대 교수)
10.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 노회찬 의원께
89~98 | 한상희 (건국대 교수)
11.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 최순영 의원께
100~110 | 김창록 (경북대 교수)
12.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최순영 의원께
111~116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합니다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교수)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님¹²⁾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 안 의원께서 로스쿨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기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띄웁니다.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관해 법사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지 않은 만큼, 안 의원께서 로스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가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사위원장이신 안 의원께, 특히 ‘일본 로스쿨 실패론’을 내세워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일본 로스쿨 실패론’

한국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상투적인 주장 중 하나가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로스쿨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그런데 안 의원님,

12) 2006년 12월 현재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과연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일까요?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

- 1) 일본 로스쿨의 법학기수자(2년 코스)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첫 번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48%에 머물렀다.
- 2) 게다가 법학미수자(3년 코스)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이후에는 합격률이 20-30%로 내려갈 것이다.
- 3) 이렇게 합격률이 내려가게 되면 학생도 교수도 시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고시학원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 4) 그렇게 되면 “시험이라는 점(點)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한 양성”이라고 하는 로스쿨제도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게 될 것이다.
- 5) 따라서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실패한 것이다.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합니다. 일본 로스쿨제도의 현상적인 문제점의 일면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일본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게 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현재의 문제점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결과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주관적인 희망사항을 ‘실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판단으로 비약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자신의 마음에 드는 현상만을 취하고, 원하는 방향으로만 논리조작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결론만을 도출해내는, 너무나도 얇고 얇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일본 로스쿨제도의 진실

안상수 의원님.

일본 로스쿨 제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체제의 종언·세계화의 진전·구조적인 경기침체라고 하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21세기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경제대국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 내몰린 일본인들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의 주도 아래 국가의 틀 전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짜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정치개혁, 행정개혁,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 등의 경제구조개혁,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등을 추진했으며, 그 일련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핵심”으로서, “사전규제형 사회로부터 사후규제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시작된 그 사법개혁의 핵심이, 바로 “사람”을 길러내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21세기에도 경제대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국가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론자들은, ‘작은 법조의 특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터잡은 반대론자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낡은 제도의 일부를 남겨두기로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겨지게 된 낡은 제도의 핵심이 바로 정원제 사법시험이었습니다. 만장일치의 방식을 취했던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그 의견서에서, “시험이라는 점(點)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한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2010년경에는 신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연간 3,000명 달성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타협의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로스쿨론자들은,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법조인의 수는 사회의 요청에 기초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신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상한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로스쿨제도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제를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의 틀을 유지시키는 이상, ‘2010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은 ‘상한’으로서 기능하게 될 소지가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과정’과 ‘점’의 어설픈 동거, 다시 말해 로스쿨과 정원제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원리적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요소의 불편한 혼거를 원초적인 한계로서 겨안은 채 출발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로스쿨 반대론자들이 주목하는 ‘낮은 합격률’은 바로 그 원초적인 한계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가 원래 숫자를 통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 사법시험으로 숫자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낮은 합격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바로 그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진행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스쿨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스쿨과 정원제 사법시험 사이에 다시금 타협을 하는 것, 예를 들어 50% 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되도록 사법시험의 합격자 정원을 늘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로스쿨이 정원제 사법시험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함으로써 개혁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중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기존의 성과와 문제점을 단계별로 확인·점검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 작업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이어지면서, 각 주체의 노력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안상수 의원님.

이러한 일본 로스쿨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행 3년째인 지금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법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침체되어 있던 일본의 법학교육에, 다양한 전문과목이 도입되고, 리컬 클리닉·엑스텐션·모의재판 등 임상법학교육이 도입되고, 끊임없는 질의와 응답으로 이어지는 긴장도 높은 수업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늦은 밤까지 예습·복습에 전념하면서 법조윤리에 대한 관심과 법조직역에 대한 동기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 교수들 또한, 사회인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받으면서, 매주 강의에 관한 교수회의를 열고, 방대한 양의 법률문헌과 판례를 갖춘 인터넷 교육연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와 법학 전문서를 출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 모두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자격이 연계되고 법학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된 결과 생겨난 질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일본 로스쿨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일본의 법조까지도 인정하는 이러한 변화야말로 일본 로스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당장의 낮은 합격률이 로스쿨의 교육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의 미래는 실패보다는 변화와 성공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본 로스쿨 실패론’의 의미

안상수 의원님.

일본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일본의 경험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은,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옳게 도입하지 않아 문제를 낳고 있으니 우리는 옳게 도입하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를 옳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사전에 통제하는 구습을 처음부터 털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했다”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 도입 반대의 논거로서 흔들어대고 있는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행태는, 사태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일본이 예방접종을 도입하면서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을 내세워, ‘일본의 예방접종은 실패했으니 우리는 전염병이 아무리 번지더라도 예방접종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 로스쿨 실패론’은 자가당착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면 총입학 정원의 통제라고 하는,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방식이 잘못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구나’라는 반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니 실패하지 않나, 그러니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자가당착도 유분수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일본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한 것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로스쿨 반대’를 위해서였기에, 그들에게는 그 모든 비합리와 비논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

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한국이 한 발 앞서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던 1995년과 1998년의 단계에서는, ‘일본도 로스쿨 도입을 안 하는데 한국이 왜 하느냐’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일본이 도입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고, 일본이 도입한 후에는 일본이 도입했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무조건 로스쿨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니, 일본이 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애당초 관심 밖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로스쿨 실패론’과 일본 로스쿨 제도의 진실 사이의 현저한 거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국 로스쿨 반대론자들의 지극히 얕은 의식구조입니다. 맥락과 과정은 무시한 채 ‘도 아니면 모 밖에 없다’라고 우기는 사법시험식 흑백논리,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몰이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몰염치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의식구조의 소유자가 다름 아닌 한국의 ‘법률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법률가’들과 함께 21세기의 격랑을 헤쳐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 실패론’이야말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가양성교육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유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안상수 의원님

이웃 나라 일본은 21세기에 걸맞는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의 핵심으로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앞서서 로스쿨 논의를 시작했던 한국은 10년이 넘게 여전히 논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논의

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은 1년이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정당들은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는 변호사들의 ‘일본 로스쿨 실패론’이라는 허상을 좇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답답하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 분발이 실로 절실합니다. 안 의원께서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15일

김창록 드림

TIP 1.

[2004년도 사회인의 입학현황]

구 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합 계
기수코스	161	51	826	1,038
미수코스	422	29	1,303	1,754
합 계	583	80	2,129	2,792
전체입학자 대비 비율	34.30%	60.20%	54.10%	48.40%

※ 사회인의 정의는 대학마다 다름; 예) 실무경험 ○년 이상 또는 대학졸업 후 ○년 이상

* 출처 :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 619~620쪽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교수)

안녕하십니까? 권철현 의원님¹³⁾

권 철현 위원장님의 교육위원회에는 올바른 교육의 실천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혁과제들로 가득한 교육위원회의 모습에, 지난 날 교수협의회 운동의 한복판에 서서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던 권철현 위원장님을 오버랩해 보면서 법학교육과 법조인력양성 제도의 개혁을 재촉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 있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사로잡힌 우리의 법학교육은 이미 황폐화되어 그 앞을 짐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기 나름으로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로 전락하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전세계에 유례가 드문 제도입니다. 그것은 법조인을 관료주의의 틀 속에서 훈련시켜 국가통치에 적합한 판사,

13) 2006년 12월 현재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검사를 키워내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법시험은 기계적으로 암기한 지식을 그대로 답안에 풀어 놓는 데에 능숙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이들을 한 군데 모아 하나의 교육목표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단일하게 훈련시켜 단일한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법조관료를 키워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양성되는 법조관료들은 판검사로서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법률서비스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법조3륜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 위에서 국민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고, 전관예우·관선변론 등과 같은 폐습을 만들어 국가사법권을 스스로 유린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런 권력을 얻기 위해 폐지어 사법시험에 매달리면서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재들이 “고시만 합격하면……”이라는 한탕주의식의 출세를 꿈꾸며 몇 년 씩 고시촌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도처에서 차세대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우수한 청년인력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그 가족들은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이들을 부양하느라 수 조원에 달하는 경제력을 낭비하는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은 이런 수요와 고시합격생 배출교라는 명성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술의 전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법학교과서가 그냥 기존의 교과서를 짜깁기하고 새 판례 정도만 정리하여 추가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법제를 별다른 비판의식도 없이 나열하면서 그것이 사법시험에 출제될 때를 기다리는 표절법학, 총정리 법학, 수입법학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여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대학이 스스로 법이론을 개발하고 이로써 국가의 법체계를 지도해 나가는 역량을 상실했음은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시합격=출세’라는 등식을 만들어내면서 고시열풍을 일으켜 소위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합니다. 법학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대학에서의 균형있는 학술평전조차도 가로막는 역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학에서 교육과 대학행정의 업무를 맡으신 적이 있는 권철현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들이 사법

시험 합격률을 중심으로 서열화되고 이 과정에서 학벌사회가 고착화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로스쿨제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런 현상들은 한 마디로 우리 법학교육제도의 참담한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 과도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온 사법시험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사법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그 개혁의 선봉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사법개혁의 과제이자 동시에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과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 대안은 여럿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방안들은 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었거나 혹은 약간의 변화만을 도모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법조인양성제도를 사법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법학교육을 비롯한 대학교육 전반의 구조조정이라는 총체적인 수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미 10여년의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는 물론 법원과 법무부(검찰), 변호사단체까지도 합의한 바 있는 로스쿨제도(「법학전문대학원」)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손쉽게 맞춤형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수가 대폭 늘어야 하겠지만, 그 자체로도 변호사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변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종래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고객에 봉사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법률전문가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합니다.

로스쿨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이미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학원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법학만 전공해서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충실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이나 또는 사회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운용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린 사고를 가진 법률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법률서비스 수요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법률 서비스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객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며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알아 낼 수 있는 고객지향형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스쿨 제도는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요청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제도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엘리트주의에 바탕을 둔 법조관료를 양성해 왔습니다. 흔히 국민들이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혹은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높은 권위의식이나 관료주의적 특권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는 국가가 아닌 대학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나 검찰관 등 법조관료가 아니라 변호사의 양성이 초점이 놓이게 되는 만큼, 그 교육도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놓여지게 됩니다. 로스쿨은 법관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이나 기술(소위 ‘법관법’)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함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기술(소위 ‘변론법’)을 교육함에 중점을 둔다는 말은 이 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들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로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로스쿨 제도는 우수한 청년인력이 시나브로 낭비되는 현상을 막습니다.

한 판 승부에 전 인생을 거는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달리, 로스쿨 제도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졸업생이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시낭인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 변호사시험을 걱정할 필요 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인력의 낭비도, 지식의 낭비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이 되면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육성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은 여기서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로스쿨은 전문화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부담이 없게 되

면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나 학부에서의 전공지식, 혹은 직장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법률을 보다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다 깊이 연마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로스쿨 제도는 전반적인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 우선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의 학문간 균형적 발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인해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화학 등 소위 ‘비인기전공’들이 새삼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법대에 편중되었던 교육수요가 모든 인문·사회과학영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대를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간 편차도 해소되어 고질적인 입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쿨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학부교육이 황폐화되거나 혹은 입시에서 채수·삼수하는 ‘로스쿨 낭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에서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 별 어려움 없이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로스쿨 적성 시험안은 그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로스쿨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에 걸친 논의의 과정에서 그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대비와 개선의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최근 발표된 로스쿨인가심사기준안의 경우 이런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형의 로스쿨 제도를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법학교수회가 진행 중인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모델 연구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법학교육의 지침을 잘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아마 권철현 위원장님께서는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법과대학들이 로스쿨을 목표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과잉투자니 과열경쟁이니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그것은 우리 대학교육,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교수의 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실무가출신 교수들을 채용해 ‘교과서 법학’의 한계를 넘어서 이론과 현실의 갭을 메꾸어 나갑니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강의내용 및 강의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미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로스쿨 도입이 법학교육의 혁신을 야기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혁신의 큰 걸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귀 위원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이런 변화와 혁신이 본격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혹은 법조인들의 직역이기주의가 이 법률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사립학교법과 같은 정치현안에 가려 그 심의조차 지연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는 한 국가의 운영은 물론, 그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법률안이 개인적인 호·불호나 정당·정파의 정치적 고려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권철현 위원장님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연속하여 보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털고자 하는 노력심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희들은 권철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대학교육의 현

실과 병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임을 잘 알기에 저는 무엇보다도 위원장님의 솔선하심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권철현 위원장님께서 모든 이의 앞장에 서서 이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이끌시고 이로써 법학교육과 법률전문가양성제도의 개혁을 선도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재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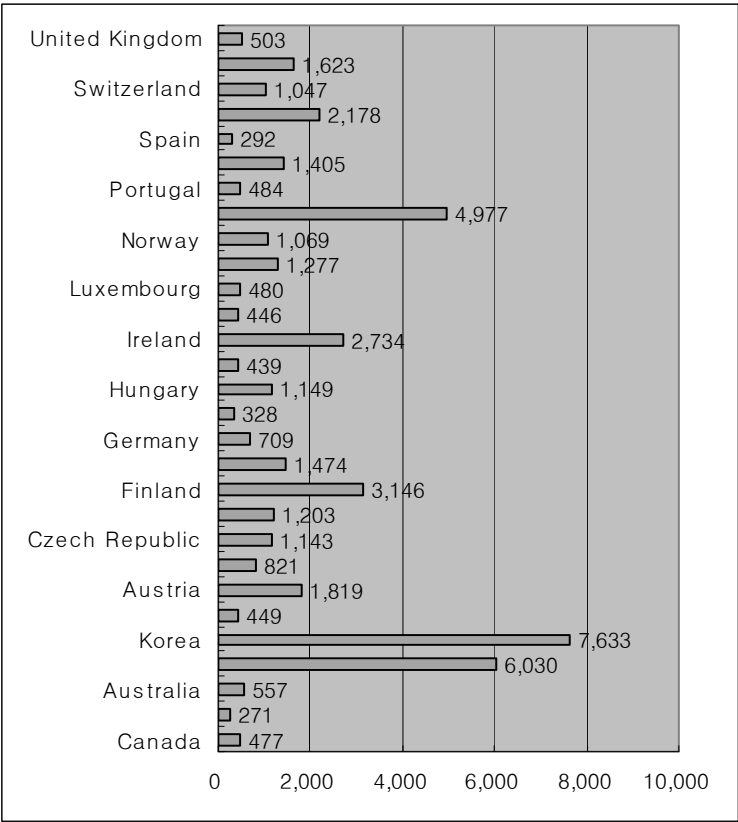
그럼,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2006년 11월 17일

한상희 드림

TIP 2.

[OECD 국가의 변호사인당 인구수(2004년 현재)]



* 출처 :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Volume 1;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www.ccbe.org); www.canlaw.com; www.lawcouncil.asn.au; <http://www.nz-lawsoc.org.nz/oslintrolegpractisenz.asp>. 여기서 호주는 2002년말 현재의 통계치임.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순영 의원님¹⁴⁾

노 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져온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도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최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6일 프레스안과 한 인터뷰를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최 의원님의 입장을 무례하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로스쿨은 변호사 인원을 늘리자,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둘 다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고, 현재의 사법고시 준비 비용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 의원님의 위의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도 사법시험 합격정원을 늘이면 당연히 변호사 인원을 늘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변호사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로스쿨 등록금이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등 4천만 원이라는 등의 예측들은 물론 근거가 없지만, 아무리 낮춘다

14) 2006년 12월 현재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로스쿨 3년간의 등록금 합계는, 고시학원의 하루 학원비인 1만2천 원에 합격까지의 평균 수강일수 782일을 곱한 금액인 9백40만 원대와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수강일수는 평균 6년 동안 6개월만 주 5일 수강한다고 가정하였음).

취약계층의 부담은 많이 늘지 않고 취약계층출신 변호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그러나, 로스쿨 등록금이 사법시험 준비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더라도 변호사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농촌 가정 출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로스쿨 제도는 현재보다도 사회취약계층 출신 변호사 숫자를 높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쿼터(quota)제도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정원인 로스쿨이라면 5명 정도의 자리는 사회취약계층 출신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인가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볼 때 현재의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로 행해지는 1%대의 농어촌특별입학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아직 로스쿨 도입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 발표된 인가심사기준안에서는 인가심사기준을 100%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학생중 취약계층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입시특별제도나 특별채용제도는 없습니다.

둘째,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역시 로스쿨인가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보면, 인가경쟁에서 만점을 받고자 하는 학교들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20% 정도가 장학생이 될 것이며 이중에서 80% 정도가 사회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16% 정도의 로스쿨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출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사회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사회취약 계층 출신자들이 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고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로스쿨 제도의 이념은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깔린 그것보다도 더 진보적입니다. 최 의원님은 등록금이 너무 높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입학기회가 줄어드니 기회의 평등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별히 우대를 하고 있어 '결과의 평등'까지도 일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농민들을 위해 로스쿨 합격생을 지역별로 안배해야 한다"거나 "로스쿨을 각 도와 광역시에 하나씩 뒀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만 "현 제도는 이런 것이 안 되니 로스쿨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의 서론일 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농업진흥도 중요하지만 사회취약 계층 보호도 시급한데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완해나갈 수는 없을까요?

게다가 로스쿨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비싼(?)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는 ‘부(富)의 재분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 등록금이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정도 수준의 등록금을 예상하는 법과대학은 현재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쓴다면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에서는 도리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변호사 증원의 요원함과 절실함 사이의 유일한 타협, 로스쿨

또 한 가지 제가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는 변호사 증원은 절실한 과제이며,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증원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현재 상대평가인 사법시험 제도를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로 바꿀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오해인 듯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로스쿨 정원도 그리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될 로스쿨의 숫자도 항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인원을 늘리는 것이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다'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있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현재와 같이 좌우를 막론하고 울산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극에 달해 '나는 절대로 변호사 도움없이 살 것이니 사법개혁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무관심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날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사법시험을 포함한 몇몇 직역군(群)들의 독점은, 적은 사람들이 각자 큰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작은 피해를 보는 이른바 "분산이익"의 문제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공중의 정책선택(public choice)이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법시험 정원의 증원은 정당들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에서 밀려있을 것이며, 그 사이 '소수정예' 법조인들은 선거를 통해 계속 국회를 장악하며 사법시험을 통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을 파악하고,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사법시험 정원 늘리지, 로스쿨 왜하냐'라며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사법시험 정원의 증원에 힘을 모아준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로스쿨을 바라볼 때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좇을 것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내야 할 것입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을 반대하는 법대교수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법대교수님들 일부는 3천명 정원이 안 되어서 반대하시고 일부는 개념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논의 이전에 변호사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 의원님이 변호사

증원이 전체 국민에게 중요하지만 외면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로스쿨을 반대한다는 법대교수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여 정책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 증원은 그토록 절실하지만 그토록 요원합니다.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유일한 타협안인 로스쿨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사법시험 정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과 로스쿨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로스쿨정원의 증대 가능성은 사법시험 정원의 증대가능성보다는 상당히 높으며 적어도 이 정도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증원 가능성은 무망합니다.

최순영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에 요청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변호사 숫자만을 늘어놓으려 하는 것은 '자유주의'라고 비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가가 변호사 숫자와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 직업교육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기는 것도 '자유주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진짜 '자유주의'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자유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구시대의 특권을 해체하거나, 과거에 깃뚫혀 왔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거나, 경쟁의 틀을 공정하게 다시 짜주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아니 한국이 아무리 사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변호사 숫자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그 목표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내에 전태일 평전 읽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은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전태일은 해방이나 혁명을 외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노동조합 인정이나 동료 노동자의 복직이나 석방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분신하였습니다.

참으로 온건하기 그지없는 요구를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주창한 것이었고 처음 한동안은 어처구니없다고 받아들여졌고 후세대에 그 용기가 칭송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확실히 타협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어낸 타협인 만큼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년 11월 20일

박경신 드림

TIP 3

[본적(3년), 출신고별(5년) 사법연수원생 현황]
 (본적 33기-35기=2,835명, 출신고 31기-35기=4,352명)

출신 본적	인원	비율	인구수	비율
서울특별시	699	24.6	10,276,968	21.0
부산광역시	223	7.9	3,711,268	7.6
인천광역시	32	1.1	2,601,278	5.3
대구광역시	187	6.6	2,544,811	5.2
광주광역시	106	3.7	1,400,683	2.9
대전광역시	57	2.0	1,438,778	2.9
울산광역시	53	1.9	1,078,926	2.2
경기도	115	4.0	10,361,638	21.2
강원도	87	3.0	1,533,331	3.1
충청북도	91	3.2	1,500,558	3.1
충청남도	134	4.7	1,930,132	4.0
전라북도	198	7.0	1,962,867	4.0
전라남도	294	10.0	2,024,422	4.1
경상북도	245	8.6	2,742,123	5.6
경상남도	259	9.1	3,162,190	6.5
제주도	45	1.6	553,864	1.1
독일	2	0.0		
미국	4	0.1	48,823,837명 (통계청 2004 11월 자료)	
기타	4	0.1		
전체 합계	2,835			

[최근 5년 서울지역 구청별 현황(1,429명)]

고등학교별 구청 분류(서울)		
강남구	234	16.4%
강동구	72	5.0%
강북구	26	1.8%
강서구	77	5.4%
관악구	40	2.8%
광진구	137	9.6%
구로구	30	2.1%
금천구	11	0.8%
노원구	28	1.9%
도봉구	19	1.3%
동대문구	33	2.3%
동작구	38	2.6%
마포구	31	2.2%
서대문구	38	2.6%
서초구	139	9.7%
성동구	8	0.5%
성북구	62	4.3%
송파구	83	5.8%
양천구	31	2.2%
영등포구	38	2.6%
용산구	33	2.3%
은평구	48	3.3%
종로구	82	5.7%
중구	52	3.6%
중랑구	24	1.7%
기타 상고 등	16	1.1%
서울지역 출신고	1,429	99.6%

* 출처 : 노회찬 의원 보도자료, 2004.12.2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교수)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의원님¹⁵⁾

국회에 들어가기기 전에도 활발한 각종 사회활동들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던 임 의원님의 변호사시절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던 모습도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임 의원님의 현행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주장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가 이번에 꼭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께 몇 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15) 2006년 12월 현재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몇 년 전 어느 미국 교수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사법연수원은 넓은 대지에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새 건물들로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수 전원이 현직 판검사들로 구성된 실무형 교수진,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갖춘 최첨단 교육시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예비법조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수원을 구석구석 돌아보던 미국교수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수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며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의 획일적 사법연수원 제도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뜻 없이 듣고 넘겼지만, 그 말은 그 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예비법조인을 국가가 하나의 기관에 몰아넣고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어가며 오로지 기존의 사법관행을 전수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판에 박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을 결정하기에 사법연수생들을 2년간 혹독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법조인을 ‘국민과 사적(私的) 권리의 창의적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통제 논리의 순응적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그 미국교수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잠시 운영되던 사법대학원 방식을 버리고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 제도를 출범시킨 것은 1971년의 일입니다. 그 후 사법시험 합격자 연 1,000명 시대가 열린 5년 전 이후로 연수생의 수가 특히 많아져 그 규모가 커진 것을 빼고는 연수원 교육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실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판결문 작성과 공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창의적인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험 답안으로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채점이 감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선표 하나,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얼마나 과거의 관행대로 판결문 양식에 맞게 썼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관박이 법조인 양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쟁 과열도 오랜 전에 도를 넘었습니다.

몇 년 전 연수원 시험 준비 중 한 연수생이 과로사 한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연수원 시험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을 택한 연수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선행학습을 하고, 예비연수생을 위한 삼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은 애당초 사치입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시급성은 바로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 대법원이 현행 사법연수원 공통실무교육과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직역별로 분리해 집중연수를 실시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적 수정은 미봉책이 될 뿐입니다.

국가가 모든 예비법조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훈장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법조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으로 쏟아져 들어 올 외국변호사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니라 대학이나 변호사단체 등 사적 부문에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이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임지봉 드림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김제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교수 겸 변호사)

주호영 의원님께¹⁶⁾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히 반대하고 계신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의 근본이 되는 것은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화된 시험에 의하여 소수인원을 선발한 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법원 주도로 양성하는 법조인은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법률시장은 곧 개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식 문제 풀이와 점수 1점을 더 따는 데에 젊음을 다 보낸 우리 법조인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충실히 수료하고 로스쿨에서 수험을 위한 공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한 외국

16) 2006년 12월 현재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의 변호사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이 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 국내에서도 송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서비스시장을 빼앗길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서비스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보와 노하우가 고스란히 외국 전문가들에게 유출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우리 법조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국가기관 출신자들로 획일적으로 구성된 비정상적 체계입니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기능의 강화와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대,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국립·사립 로스쿨 출신의 많은 법조인이 양성되고, 그 법조인들은 일단 모두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평가된 능력과 덕성에 따라 추후 법관이 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제도로는 법조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 양성하여 서열과 기수가 분명하므로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법조일원화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기존 제도에 의하여 특혜를 받아 오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께서서는 법조인이시지만 법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시니,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께서 공식적 로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를 극력 반대하신다는 뉴스를 듣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저는 주 의원님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한 내용들 중 중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제도라는 것만으로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되는가?

주 의원님께서서 로스쿨을 반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로스쿨은 미국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법과 형법, 헌법 등의 제정 초기에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법들은 미국법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소비자법 및 독점법,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법, 전자거래법, 환경법 등 선진분야의 법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법조계가 미국법을 알지 못하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역과 거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중에서 미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국의 제도라는 점만으로는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구한말 극단적 쇄국정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제인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불완전한 개혁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있을지언정 미국제도와 대륙법체계간의 마찰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도인 로스쿨을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맞게 잘 소화하여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경쟁과 사법시험 경쟁

주 의원님께서서는 로스쿨 졸업 후 간단한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줄 경우 로스쿨 입시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로스쿨제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님께서 로스쿨 정원이 지금처럼 극소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률가 대량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정원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의 문제는 현재의 제도보다 결코 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원을 늘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은 사법연수원제도하에서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로스쿨 입시의 경우 적성시험 등 다른 평가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에서 자신의 전공 공부를 성실히 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곧 각자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로스쿨 입시 경쟁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서 탈락한 경우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어떻습니까? 법조인이 되려 한다면 타 전공 학생들은 물론이고 법과대학 학생들조차도 일찌감치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불합격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야말로 ‘폐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학교를 휴학한 채 고시촌 골방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3-4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커서 과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로는 전문성이 충족되지 않는가?

주 의원님은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한다 하여 전문성을 갖추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사법시험 공부에 4-5년,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들이나 예비판사들, 초임 검사들은 전문성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성은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등 교육과정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의 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실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대학졸업 후 10년 후의 상황을 두고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각자 전공공부를 성실히 한 후 3년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 전문직역에 7년 종사한 사람과 대학과정 4년과 졸업 후 2-3년간 고시공부를 한 후 2년 연수원을 마친 후 5-6년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된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전문성이 더 있을까요?

수사나 재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몰라도, 경제와 국제교역 등 보다 진취적인 영역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연 로스쿨 제도가 전문성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누구나 먼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운 후 법률가가 되는 길을 널리 열어 놓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제도보다 법률가의 전문성 제고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좋은 법률가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법률가는 정상적인 교육과 변호사로서의 생활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양성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이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김제완 드림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연세대 법대교수)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¹⁷⁾께,

제 법 날씨가 쌀쌀한데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기획하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조 의원님께 보내게 된 연세대의 김종철입니다.

제가 기획자로부터 당부받은 주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편지의 수신자가 조 의원님으로 기획된 것은 조 의원님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 “로스쿨로 바꾸면 교과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 혹은 “교과과정 내용은 사법시험 내용의 통제를 받는데 사법시험 출제는 바로 법대교수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을 둔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법조의 특권주의와 부패를 청산하고 법치주의의 신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오신 조 의원님의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조 의원님께서 역시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로스쿨 도입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개혁하는 만병통치약이거나 유일한

17) 2006년 12월 현재 민주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방법일 수 없지요. 그래서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도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도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제는 기정사실이 된 법학교육의 파행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법학교수들이 노력한다면 현재의 제도 속에서도 일정한 법학교육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 문제는 현재의 법학교육제도와 법률가양성제도가 일부 교과과정의 변경이나 사법시험의 출제방식의 변화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큰 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송무 중심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만을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학자의 진단처럼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법률가 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lawyers)를 개발독재를 통해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잉태된 법률가양성제도가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입니다. 세계화의 요구 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해외교환프로그램의 특전이 주어져도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면서 육법전서를 펴들고 도(道)를 닦듯이 20세기형 수험준비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곳이 우리의 법과 대학입니다.

조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법률가상은 이런 것입니다. 법률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 기업 활동의 첨병이어야 합니다. 법률가는 폭발하는 한류(韓流)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담당할, 입법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시민생활의 고충처리를 대리할 보조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법률가들이 고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방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영에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합리적인 일상생활의 길잡이가 되

는 사회가 조 의원님이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제도, 법률가 양성제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살인적인 대학입시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년시절부터 점철된 사고 교육에 찌들어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차려진 밥상 먹기에 익숙한 신입생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복제형 지식체계를 강요하는 사법시험을 위해 입학 전부터 신림동 고시촌을 기웃거리게 하는 현행의 제도인가요?

인생은 결국 시험 한 판으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영악한 학생들, 아니 학생이기보다는 수험생으로서의 존재기반을 자각하고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부분은 시험에 방해가 되는지의 선택기준에 익숙한 그들에게 첨단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강의하는 게 어떤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통합사고형 문제를 출제하든 고득점 순으로 1,000명을 줄 세워서 선발하고는 나머지 수만 명을 평생의 낙오자로, 고시당인으로 만드는 현재의 사법시험의 성격이 얼마나 바뀔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조 의원님! 저는 감히 로스쿨 제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한국 법학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초학문의 세례를 받은 학부 졸업생을 상대로 사법시험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전에 조용하는 법을 이해하고, 형성하고,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체득하는 교육을 최적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교육제도가 로스쿨이라고 믿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익힌 개별 생활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교육제도 말입니다.

로스쿨의 핵심은 대학원교육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학부의 법학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본 법률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체계적 구성과 심도, 교육방법은 현재와 많이 달라야 할 겁니다. 갓 학부에 입학한 경우와 4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대학원생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겠지요.

제가 담당하는 헌법과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최소한 30%를 넘는 학생들이 정치학, 외교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학의 기초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일 겁니다. 그들은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와 정치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겠지요. 그들에게 국가와 헌법의 형성목적이나 구조에 대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중등교육수준을 갓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겁니다. 다루는 사례의 폭과 깊이, 현실적 적실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요.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의 목적의식도 남다르겠지요. 문제의식, 지식수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어떻게 학부교육과정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을 결사반대하던 일본의 법학자들도 교육의 효율성과 성취도에 있어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로스쿨 체제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바로 대학원에서의 전문교육체제의 장점 때문일 겁니다.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교과과정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스쿨의 첫 일 년 동안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법학과목에 대한 집중심화학습이 있게 될 겁니다. 3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이들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 현재의 교과과정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법의 실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세계화시대의 법률시장의 개척을 위해 필요한 외국법에 대한 교과목도 개별 로스쿨의 특성에 맞게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사례나 가상의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종합형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될 겁니

다. 개별 로스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법률가상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될 것입니다. 판검사형 법률가, 로펌형 법률가, 일반 공직형 법률가, 공익 활동형 법률가 등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전문법학 분야의 특성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또한 법률정보탐색과 법률문서작성에 관한 기초교육,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겁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방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 교육방법외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교육방법이든 학생의 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연마하고 학문이론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미리 예습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점과 사례들을 환기시키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지 기초 지식이나 원리를 모두 다 망라하여 세세하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점은 일방적 강의형보다는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합니다. 또한 실무기초과목으로서 임상법학교육(legal clinics), 모의재판을 필수화하고, 디지털자료 활용교육,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공동강좌(team teaching)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됩니다.

학부법학교육제도로는 이렇게 요구되는 강화된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

요. 그러나 교양학문을 전제로 하는 학부체제에서 선제적 투자에 바탕한 강화된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학교육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테지요. 왜 우리와 같은 후진적 법률가양성체제를 고집하던 일본에서 학부에 법학부를 두면서도 로스쿨체제를 도입하였는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의학과 경영학이 왜 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게 되는지도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조순형 의원님! 벌써 제한된 지면이 차버렸습니다. 법률가양성제도에
서 무엇이, 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감히 당
부드리고, 못다 한 말씀은 추후를 기약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절
기에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2006년 11월 24일

김종철 드림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의원님¹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주의원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정원제 폐지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 로스쿨

저는 변호사 증원이 절실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에 유일한 타협안으로 열매 맺은 것이 로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현재 정원을 정해놓고 상대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사법시험을, 적정한 지식, 소양과 기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의 총 정원을 교육인적부에서 통제하긴 하겠지만 현재 법무부에 의한 사법시험 정원제와는 질적으로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2006년 12월 현재 한나라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그러나, 혹자는 '과연 변호사 정원제의 폐지 또는 변호사 증원이 절실한가?'라고 반문합니다. 저는 '상식대로 살아도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법제화의 일꾼들 변호사

의원님도 인터넷 등을 통해 매년 최소한 두 세 번씩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민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88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이후에도, OECD와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벨상, 칸느와 베니스에서의 수상, 그리고 여러 명의 프리미어리거들과 메이저리거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도, KTX, 인천공항과 새 청계천이 생긴 이후에도, 별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비관적인 예측에 따르면, 개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시점에서 이민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남아 있으면 손해인 나라'로 남는 것인가요?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기업의 관점에서 보든 서민의 관점에서 보든 가장 살기 답답한 이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돈도 없고 "빚"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편법 쓰지 않고 상식대로 살다 보면 계속 크고 작은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는 경쟁의 저 뒤편에 팽개쳐진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의 상식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다수가 사정을 듣고 보면 "비상식적이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명제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수많은 기업 활동에 대한 허가제량을 기준도 없이 행정청이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관련 법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외환거래법과 증권거래법,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은 외국에서는 쉽게 가불가(可不可)를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행위들을 이런 식으로 매

우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동북아시아 허브"가 될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접 기업들 법률자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에게 거의 농담에 가깝습니다.

물론, 비상식의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 중에 더 많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옷을 지경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 기간의 청춘을 무의미한 반복 노동에 바쳐야 하는 젊은이들 고용인들과 똑같은 통제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비상식의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작은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욱 무수하게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수많은 온라인서비스들이 MS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하고 다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식의 리스트는 사회 곳곳에서 어차피 힘든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도들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들 동의하는 이와 같은 명제들이 왜 올바른 변화를 추동하고 있지 못할까요?

이들 제도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로 유지됩니다. 첫째, 누군가 그 제도에 대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둘째,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기득권을 '관행'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의 원천적 믿음: "국가는 기득권을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이 물론 국가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게 맡기기에는 국가 스스로가 위와 같은 제도의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스스로가 상식보다는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실력 대결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위와 같은 제도들로부터 치부하는 기득권자들에게 '포섭'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법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도리어 한국에는 "국가는 기득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며, 이 규범은 법제도 속에 수많은 비상식과 몰상식을 낳고 있습니다.

개개인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들 모두가 상식을 법제화하는 역할을 조금씩 맡아주어야 합니다. 상식을 법제화하는 것은 말로만 쉽게 타이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력 있는 법적인 논리를 구성함은 물론이 논리를 집행하는 절차를 꼼꼼히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과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게 알아듣게 말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률가들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더욱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리눅스를 주로 쓰시는 분인데 리눅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점에 분개하셨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편지도 보내고 하였지만 별 소득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몇몇 행정기관들이 시정을 하였다고 하고,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수님은 법을 공부하셔서 강제력 있는 법적 논리를 구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역시 법을 공부한 저도 "오늘 당장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분개하는 비상식의 경험을 수도 없이 했지만 실제로 실천에 이른 경우는 아직 한두 건 정도입니다. 하물며 법을 공부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득권보호를 위한 몰상식의 사표, 사법시험 정원제

그러나, 한국에서는 바로 사회 곳곳에서 상식을 법제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야 할 변호사들이 비상식의 사표(師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법시

험 정원제의 보호막 속에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정원제는 "국가는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원조로서 사회 곳곳의 개혁논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마저 이럴 수 있다면 다른 직업종사자들도 당연히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결국 한국의 수많은 사회개혁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 빼고 다 바꾸자'는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00년 10월경 대한변협이 변호사 정원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1만 명에 이르고 (미국은 약 250명입니다), 법률서비스 단가가 높아 저소득층은 '민사상 치외법권'에 살고 있고, 노조전문 변호사는 단 1명에, 교도소 및 기타 수용시설에 많은 이들이 법의 보호 및 관심 '밖'에 갇혀있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부재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IMF사태로 전재산을 날리고, 기업들도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며 뇌물을 남발하고, 유학 갔던 장애인 박사가 김포공항에 발을 디디며 '나는 다시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

위의 상황은 6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아직도 변호사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숫자를 통제해야 합니까?

변호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과연 '좋은 일' 할까?

바로 이 시점에서 위의 질문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연 변호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인가? 도리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소송만 남발하는 것이 아닐까?

변호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법적인 주장으로 만들어 공론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체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정법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의 장(場)이 되어버린 실

정법이 아니라, 그 법보다 높은 헌법, 또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창의력 있게 구성된 논변으로 사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 소송'이고 무엇이 '나쁜 소송'인지를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념과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들을 잘 정리된 법적 주장으로 온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비난을 벗어나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저울질한 판결을 낼 것입니다.

제 서한을 읽으시며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로스쿨 지지자 분들의 서한들이 같은 지면에 공개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법제사법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한나라당이 로스쿨이 담고 있는 개혁의 열망을 헤아려 순조롭게 로스쿨법안을 통과에 힘써준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로, 한나라당은 '부자보호당'이라는 세간의 비난의 목소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28일

박경신 드림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교수)

정봉주 의원님께¹⁹⁾

한 라디오 방송국의 시사토론에서 만나 뵈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편지글을 쓰려니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최근 로스쿨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격으로 몇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흔히들 로스쿨 문제를 사법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더러 로스쿨제도는 법률가양성이라는 사법제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법조인들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문제는 사법의 문제이자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우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법률가양성은 대학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직(profession)의 양성, 특히 그 대표격인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는 교육제도나 교육현실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일례

19) 2006년 12월 현재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로 198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됩니다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대학진학율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이 깔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대학교육의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경제발전으로 교육여건이 좋아짐과 함께, 대학교육이 공교육 체계로 흡수되거나 혹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서, 종래 한정된 계층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학교에 중산층 혹은 하층계층의 서민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민들이 이런 대학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여 보다 상위의 계층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1970년을 전후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그 결과 법률가의 수도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률서비스시장을 통제해 왔던 법조인들은 일순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대학이라는 높은 문턱을 만들고 이를 통과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숫자를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자 이런 진입장벽은 원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가집단은 법조윤리강화니, 실무교육의 강화니 하면서 법률가 양성체계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어보고자 무진 애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중심으로 ‘변호사 망국론’이 횡행하였던 것이나, 독일에서 1970년대 보다 개방적인 법률가 양성제도를 실험하다가 법조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것도 그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인들의 저항은 그리 주효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육의 개방은 시대적 추세이자 사회정의에 봉사하는 것이기도 한 반면, 법조인들의 기득권은 부분이익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법조인 중 일부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여성법률가가 늘어났다는

푸념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음을 감안한다면, 그런 기득권중심의 반발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교육내용이나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타협하거나, 혹은 법률가의 직역확대나 세계화전략으로 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들은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어 대학교육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양자간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법조사회 내부의 구조조정이나 구조변환의 작업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학진학률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980년 27%에 머물렀던 대학진학률은 작년 기준으로 이미 82%에까지 급증하여, 미국(63%)이나 일본(49%)은 넘어섬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대학졸업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육과 전문직 간의 병존전략을 취하는 외국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전문직 집단들은 대학교육으로부터 전문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통제하거나 양자의 연결고리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대표적인 의사와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는 그 단적인 예가 됩니다.

의대의 정원통제는 편향적인 입시경쟁을 야기하여 이공자연계열의 각 전공영역간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여 대학교육 자체를 외면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왜곡은 물론, 소위 ‘비법대 출신 합격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인문사회계열의 교육현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교육 자체를 파행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사법시험은 이 교육체계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시험제도는 법학교육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미국 로스쿨의 교육내용이 “변호사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lawyer)” 혹은 “변호사처럼 행동하기(acting like lawyer)”에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 법학교육은 부끄럽게도 “사법시험 출제자처럼 생각하기” 혹은 “사법시험 채점관처럼 행동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대생이 아닌 여타의 인문사회과학계의 학생까지도 고시열풍에 휘몰아 넣음으로써 학문의 균형적 발전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뿐 아닙니다. 그것은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 등으로 대학의 서열화라는 폐단까지 야기합니다. 대학마다 고시반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생들을 편파지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풍토는 여기서 연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교육의 왜곡현상은 그대로 대학입시 열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입시생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우선, 법학과 우선을 외치며 치열한 경쟁체제에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입시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려 하기 보다는 국·영·수 과목 성적이 우수한, 그래서 사법시험과 같은 획일적 전형에 익숙한 학생들을 골라 뽑는 데 여념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제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우리 교육체계를 법률가 양성체계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법률에 관한 지식을 아주 좁은 법해석학 혹은 ‘법 도그마’에만 한정시키고 그에 관한 단순지식만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현실적용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던, 16년에 걸친 정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이제 사법시험 앞에서는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리고 차라리 신림동 고시촌의 총정리 문제풀이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실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시도되었던 학부제의 구상은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경직된 전공의 벽에 갇혀 틀에 박힌 지식이나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익히기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력과 창의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로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이은 제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이 주어진 지식을 피동적으로 암기하고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각종의 탐구활동이나 선택학습 방식들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MBA과정, 건축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 전문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 또한 이런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건전하고도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교양인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양인으로서의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에서 집중적인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사나 전문경영인, 건축가 등의 전문직종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학교육과 법률가의 양성을 연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로스쿨은 우리 교육체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법률가 양성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이 야기한 이 모든 병폐들을 다 치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중요한 부

분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가 양성교육을 하게 되는 로스쿨은 학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대학교육체제와 가장 잘 들어맞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학부에서의 다양한 전공과 폭넓은 교양을 쌓게 하고, 이렇게 획득한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대학원 과정에 끌어들이며 법률전문직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기술, 직업윤리 등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 원조격인 독일에서조차 비판받는 ‘통일적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획일교육의 틀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토대로 다양한 내용의 법학교육을 가능케 함으로써 종래 고립무원격인 법학으로 하여금 다른 학문영역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마치 학부제가 전공의 벽을 헐고 폭넓은 교양교육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듯이 로스쿨은 법학이라는 ‘아집’을 깨고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재구성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학술과 대학교육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로스쿨이 도입되면 상당수의 법과대학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는 대학입시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가는 것이 우선시되었지만,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아무 학과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로 진학하여 거기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학과선호도가 보다 평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현재 실시 중 혹은 추진 중인 우리 교육체제의 개선방향과 매우 잘 어울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나 학부제의 구상, 고등전문직업교육체제의 도입,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일련의 교육체계들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역으로 법률가 양성제

도 자체도 이런 전반적인 교육체제와 어울림으로써 보다 우수하고도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봉주 의원님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오로지 “로스쿨주의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우리 교육현실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음에도 마치 그것이 대륙법계의 특징인 양 호도하는 입장이나, 교육과정의 전후매력조차도 포착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합격자 수만 늘이면 된다, 혹은 법학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 강변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그냥 한숨만 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법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도, 예쁜 두 딸의 아버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들에게 고시답안 작성요령을 주입하는 강사이자, 초조히 시험결과를 기다리는 입시생과 그 언젠가부터 ‘예비입시생’이 되기를 강요당한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기분열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한 자락을 저는 로스쿨 제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의원님께 이 제도가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 드립니다. 그것은 법률가를 지망하는 법대생이나 대학입시생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공부하고서도 장차 그들이 원하는 법률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험출제관이나 채점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법률교과서뿐 아니라 데카르트와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읽고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도서관이나 고시원이 아니라 사회봉사현장이나 취미생활공간에서 대학과정을 보내고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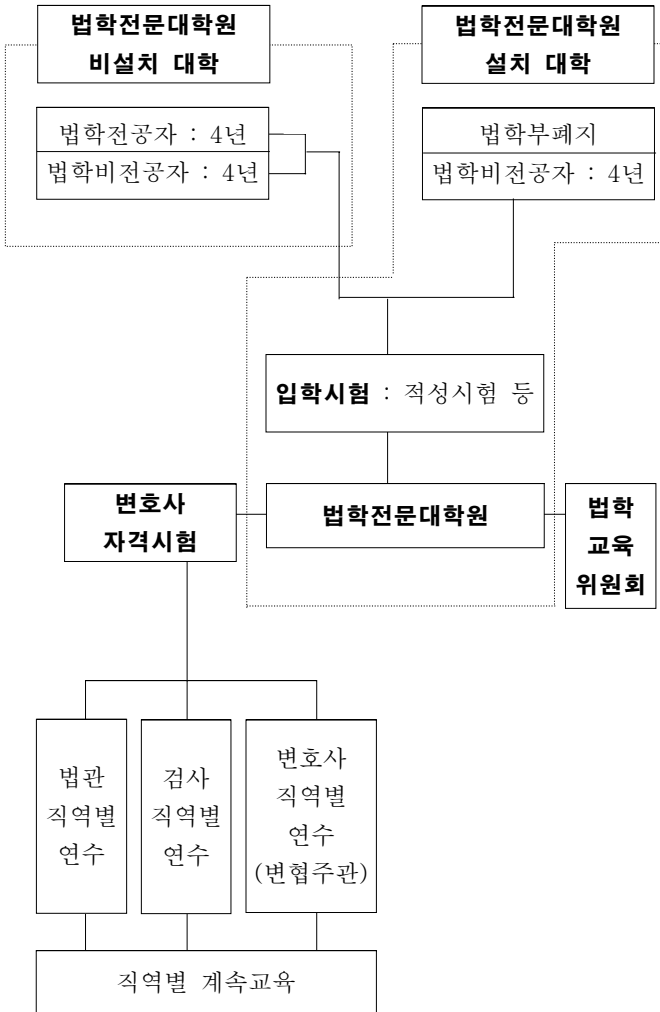
의원님의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30일

한상희 드림

TIP 4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요도]



* 출처 :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 446쪽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 법대교수)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²⁰⁾께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과 법 사회학을 가르치는 이국운 교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급한 현안인 로스쿨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수업시간에 저는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前)근대와 근대의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의 출현’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구태의연하게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들먹이려던 저의 수업계획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저의 근대(近代)가 학생들에겐 고대(古代)로 느껴질

20) 2006년 12월 현재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수업시간 내내 불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화두는 ‘변화’요 또 ‘그 변화의 속도’입니다. 인터넷과 IMF 구제금융이 동시에 날아들었던 1997년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해 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것처럼 명백한 진실은 없습니다.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는 개인이나 집단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몰락하는 것이 엄정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재야통일운동의 이론가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입신한 유 의원의 정치적 성장도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은 성공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로스쿨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바로 ‘속도’라는 화두 때문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 사회는 12년 가깝도록 제자리 뛰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세 번 교체되도록 바뀐 것은 ‘세계화추진위원회’(1995)-‘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8)-‘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0)-‘사법개혁위원회’(200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로 이어져 온 추진 주체의 간판들 뿐입니다. 사법시험합격자수가 천 명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문대학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고, 최근에는 사법연수원마저 그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로스쿨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속도’라는 화두에서 저만치 비껴나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정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1995년 이후 미국의 주요 로스쿨들은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을 미국변호사로 변신시키는 작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서울 한 복판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미국변호사들을 흔히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식 글로벌 자본주의의 첨병을 양성하는 이 프로젝트에 맞서서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이 법률가집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개혁을 진행시켜 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출범한 일본의 로스쿨

체제가 실상 우리의 로스쿨 개혁논의에서 자극받은 것이란 점에 이르면, 그저 허탈하고 안타까운 생각만 들 뿐입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로스쿨 논의를 이끌어 온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전체가 근본적으로 정치문제요 입법문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법서비스의 공급자들인 법률가들에게 개혁논의의 주도권을 맡겼던 것이 패착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애초부터 이 일은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입법적’으로 추진했어야 옳았습니다.

사개위와 사개추위의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사법의 백년대계를 짜고 로스쿨의 득실을 따져 보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제가 유 의원을 설득하는 모습이 아니라, 유 의원께서 로스쿨 문제에 관한 총대를 메고 저를 설득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번듯하고 멋졌겠습니까?

거의 12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우리 법률가집단이 로스쿨 문제에 관해 겨우 내놓은 결론을 유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로스쿨 전체의 총 입학정원을 규제함으로써 정원제사법시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관계특혜분양 로스쿨체제’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은 내놓지 않은 채 사법개혁의 외양만 덮어쓰겠다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법서비스의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의 관점에서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건대, 정부의 로스쿨 법안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국회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그 변화의 속도’가 화두인 세상에서 12년이면 이미 너무 오래 ‘정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 부치고 국회가 로스쿨 문제의 전면에 나서

야만 합니다. 각 정치세력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라고 하고, ‘정치적’이고 ‘입법적’으로 문제를 결말지을 때입니다. 정부를 통해 법률가집단이 내놓은 법안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법안일 뿐입니다. 사법서비스의 소비자들, 즉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대변하는 국회로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합당한 수정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헌법이 선언하듯이(제40조) 입법의 주도권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 아시듯이, 정부의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쿨체제는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으니 시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체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법조기득권을 강화할 뿐이니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에 관하여는 주로 법률가-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주장은 지난 12년 동안 법률가집단 내부의 토론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사개위와 사개추위를 통해 충분히 제기되고 반박되고 절충되고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논의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허송세월이 될 뿐입니다.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법률가집단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시간 끌기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두 번째 견해입니다. 로스쿨 체제가 법률가집단 전체의 기득권충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법접근권(司法接近權)을 침해하게 된다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로스쿨법안에 담긴 총입학정원의 규제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완전한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도입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입학정원이 규제되는 한, 현재의 법률가양성제도가 양산하는 각종 병폐들은 그대로 로스쿨체제에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들의 특권의식은 여전하고, 명문대학의 고시학원화도 계속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폐습을 끊고 진정으로 사법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법률가 양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충입학 정원의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법학도에 대한 장학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의 로스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법무에 특화하여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미국변호사들과 맞서겠다는 로스쿨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익법학과정으로 메이저 로스쿨들과 경쟁하겠다는 로스쿨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 출신의 법학도도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신자유주의의 침병들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년 동안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왔고, 이제 그것이 법률가 집단의 논의를 넘어 국회의 책임이 되었는데, 국회마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스스로 부족함을 안고 있는 정부 제출 로스쿨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염려됩니다. 법률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바라보아야 할 국회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최대한 수정해서, 기왕이면 더욱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 오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12년을 허비한 까닭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이국운 드림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합니다.²¹⁾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교수)

노회찬 의원님께²²⁾

스스로 상원인 양 하면서도 ‘법복귀족의 위원회’로 전락하여 그 기
득권보호에 열심인 국회 법사위에서 그나마 노회찬 의원님의 열
정이 있기에 작은 안도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의원님으로 대표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약간
의 반론을 곁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글
을 통해, 일부에서 ‘어쭙잖은 평등주의’를 가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을 옹호하기 위해 내세우는 억지논리의 음모 또한 정리해 버렸으면 합
니다.

“로스쿨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21) 이번 편지는 본책 41쪽에 실린 박경신 교수의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에 대해서 본책 110쪽에 실린 최순영 의원이 보낸 답신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에 대한 한상희 교수의 재답신입니다.

22) 2006년 12월 현재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체로 로스쿨 제도에 반대하는 분들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당의 최순영 의원님께서도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을 거론하셨듯이 MBA과정이나 의·치학 대학원 과정에서의 등록금을 예로 들면서 로스쿨도 그 정도 학비가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전문직 교육제도이자 부의 세습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스쿨은 부자만이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것 입니다. 로스쿨의 교육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학생들이 훨씬 저렴하게 공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장은 이래야 합니다: “로스쿨은 누구나 쉽게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의 차이는……

물론, 로스쿨에서의 교육비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고 따라서 정규의 대학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겠지요. 하지만 이 점은 현재의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현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정규의 대학과정에서나 혹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약 12과목 정도의 법학수업을 들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대학 4년의 교육과정이 요구되기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평균 2~3년간의 고시준비기간 동안의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 등은 온전히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

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자금 융자도, 신용 대출도 혹은 국가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능력에 의해 고시공부의 경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실제 이런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고시공부를 중도에서 그만 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금 등을 공제하고도 매달 130만원 전후의 ‘봉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2 년간 은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용의 문제는 정책문제입니다.

그러면 로스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학생 개인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보며 적지 않게 당혹하게 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대학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이, 왜 로스쿨에 관해서만큼은 그 교육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또는 로스쿨의 교육비는 당연히 학생 개인의 부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교육비용의 문제는 정책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에서의 교육비용 또한 이런 맥락에서 먼저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나름으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재정을 전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실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그 학생 2,000명에게 매년 지급하는 봉급명목의

지원금은 2005년 통계로 326억원에 이릅니다. 만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생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돈은 그대로 로스쿨에 지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별도의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서도 적어도 2,000명의 로스쿨 학생에게 매년 1,6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면 반드시 반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국가가 이런 돈을 지급해야 하냐는 반론입니다. 그렇지요. 현재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이 326억원의 국가재정은 잘 못 책정된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개인사업자가 될 사람에게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로스쿨 지지자들은 이 돈을 보다 명목있게 사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R.O.T.C 장학금처럼, 로스쿨 학비(가능하다면 생활비의 일부까지)를 이렇게 국고에서 지급하고 그 대신 졸업 후에 일정한 기간(약 3년 내지 5년)동안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안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국선변호나 법률구조, 공익변론, 입법봉사, 시민단체지원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저렴하고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학생은 학비 걱정하지 않아서 좋고, 국가는 현재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변호사 혹은 저소득층 국민들이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 집단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일석이조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영국은 법과대학이지요)은 가장 유효한 사회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층 계층의 사람들은 복

지제도를 이용하여 혹은 미국의 경우 군대의 징집에 응한 대가로 나오는 학비지원 혜택을 이용하여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밟았던 것입니다. 1970~80년대에 이들 국가에서 변호사가 급증하였다는 비명(?)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이용하여 법과대학 혹은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학금제도는 교육경비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교육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식이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술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해 지난 여름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심사를 위한 기준안(이하 「인가심사기준안」)에 의하면 각 로스쿨들은 재학생의 20% 이상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은 그 80%이상을 성적순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액장학금, 2/3장학금, 반액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의 경제능력에 맞추어 지급하면 약 3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스쿨은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유급조교를 각 교수 1인당 1명 이상씩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법학연구소 역시 소정의 유급조교나 연구원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로스쿨이라도 교수가 30명 정도는 있게 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의 학생이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교비에서 지급되기도 하겠지만, 상당부분이 교수들이 수주하는 연구용역으로부터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일반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인가심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각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과 향후 재정 운용 계획, 교육비 투자율, 법인 전 입금 비율, 기부금 확보방안 등의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주요 사립대학의 재정부문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등록금 의존율이 50%내 외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런 재정구조가 로스쿨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가심사기준안의 기본 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이에 인가심사기준안은 로스쿨의 재정구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면서도 그것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통제장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이나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대학교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대체로 비용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언제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앞서 「학자금의 국고지원-졸업 후 공익근무」의 연계방안을 말씀드렸습시다만, 이는 로스쿨에서의 학업비용을 국가가 법률구조 등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써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경비가 국가나 사회 혹은 학교법인 등으로 이전하거나 분산되는 방식은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마련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컨대 로스쿨제도에서의 학업경비는 세 가지의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경비를 마련하는 체제로, 이 때에는

스스로 그 경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마련하는 저렴한 이율의 학자금 융자제도(이 또한 인가심사기준안에서는 로스쿨을 설치하는 학교가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장학금제도나 유급조교제도 등으로 학교가 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인가심사기준안은 다른 학생의 등록금에서 부담하는 방법보다는 외부장학금을 유치하거나 혹은 기부금,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학자금의 국고지원-졸업 후 공익근무」의 연계방안과 같이 국가가 교육비용의 부담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가가 직접 로스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법과대학원에 지원한 국고만 해도 2004년도 현재 108억 700만엔(당시 환율로 약 1,2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이 25억엔, 일본학생지원기구를 통한 학자금 융자 등 3,5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장학사업이 68억 200만엔, 교육·연구 프로젝트 지원이 15억 500만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사회가 그 교육비용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기부금이야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로스쿨에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요구되는 임상실습의 과정에서도 교육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법률사무에 관한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 과정에서 의대부설병원처럼 로스쿨 부설의 법무법인 제도를 만들게 되면 로스쿨에 투여되어야 하는 경비 및 학비의 상당부분을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서 어떤 것을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점입니다만, 이는 온전히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즉,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하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첫 번째의 방식 즉, 개인이 모든 교육비용을 다 부담하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래서 학비부담이 과중하니까 로스쿨 제도는 좋지 않다,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논리의 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 신화’는 없어져야..

저는 교육비용이 이렇게 국가의 부담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분산되는 로스쿨 제도라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면 됐지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사법시험의 방식이 계층간 분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2~3년의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신분의 상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들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로스쿨 제도는 적지 않은 비율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자수성가, 고졸신화 등의 찬사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주장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노무현 신화’는, 노무현과 같은 한 사람의 성공사례 뒤에 은닉되어 있는 수많은 실패사례와 또 그 주위에 있는 가족 등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고시에 합격하여 신분을 상승시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일생을 고시에 다 바치고 절간

에 파묻혀 공부합니다. 어찌해서 때 맞추어 합격하면 다행이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고시공부도 산업화하여 4조원 이상의 학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자수성가 추구형의 고시생들은 대부분 낙방의 고배를 들면서 일생에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그 가족들은 이들의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머리 좋은 식구 한 사람의 고시공부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100명의 실패를 담보로 1명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무현 신화’는 평등주의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체제안정화에 봉사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노력하면 성공 한다”, “출세는 하기 나름이다” 등등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개인적 의지의 문제로 대체해 버리는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마치 춘향전처럼 수절하면 기생도 정렬부인이 될 수 있는 양 선전하면서, 수많은 기생들이 겪어야 하는 성 착취, 노동착취의 억압을 오로지 그 기생의 부정과 부덕 때문인 양 덮어씌우는 과거의 권력담론들만이 재생산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노무현 신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제도가 그들의 상향이동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사회가 장학금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며 전체적인 상향이동의 체제를 제도로써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상향 평준화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의원님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교육제도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정도의 교육비용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그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

가, 사회가, 그리고 동문회나 학교법인 등과 같은 교육관련 주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보다 평등주의적인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합니다.

현재의 국회 구성을 보면 로스쿨 제도 자체의 도입에 대하여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야의 막판 타협이니 대타협이니 하는 형식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냥 로스쿨법안이 통과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로스쿨 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의원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해 주실 것을 삼가 간청하고자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를 향한 진보의 큰 걸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5일

한상희 드림

TIP 5

[외고 · 강남 8학군 출신 판사 비율]

연도	서울지역 외고(명)	8학군고교 (명)	최대고교	외고·8학군 출신비율 (%)	서울출 신비율 (%)	전체 판사수(명)
2006	13	13	대원외고(4명) 명덕외고(4명)	27.7	35.1	94
2005	10	12	대원외고(6명)	23.9	33.7	92
2004	5	12	대원외고(3명)	14.9	34.2	114

* 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7.1.9 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2998.html

지금 바로 ‘구조’ 를 바꾸어야 합니다 ²³⁾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순영 의원님²⁴⁾

로스쿨지지자들에게 보내주신 답신(“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 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 06.11.23., 최순영 의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 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낸 열 통의 편지에 대해 유일하게 되돌아 온 응답이기도 하고,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응답이기도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큼니다.

답신에서 지적하시거나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상희 교수께서 노회찬 의원께 보낸 편지(‘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0호)를 비롯한 앞선 편지들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습시다만, 답신이 저의 편지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논지 일부를 비판하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재답신을 띄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 이번 편지는 본책 44쪽에 실린 박경신 교수의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에 대해서 본책 117쪽에 실린 최순영 의원이 보낸 답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에 대한 김창록 교수의 재답신입니다.

24) 2006년 12월 현재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문제는 ‘구조’입니다.

답신에서 우선 눈길을 끈 것은 법학교수들에 대한 엄한 질책입니다. ‘법학교수’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이름을 힘겹게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교수 여러분께서 과연 얼마나 자기 제자들의 미래와 이 땅 사법구조의 개혁을 위해 처절하게 법학교육의 개혁과 법조기득권 타파를 위해 애쓰셨던가요?”라고 하는 호된 꾸지람에 접하고서, 그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지금의 문제 상황에 대해 법학교수들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선두에 서서 투쟁할 때에 그러한 요청이 일반의 동의를 얻고 대중들의 연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임에도, 법학교수들은 법학교육의 개혁에 충분히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 의원님의 너무나도 타당한 그 질책이, ‘법학교수들이 열심히 하거나 하면 지금의 틀 속에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낙관론으로 이어지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의 차원을 넘어선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點)에 의한 선발’이라는 ‘구조’이며, 그 결과로서 생겨난 대학 법학교육과 법률가 자격 사이의 단절, 그리고 법학교육의 사법시험에 대한 종속입니다.

한국에서 법률가 자격을 얻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사법연수원 입소자 중 탈락한 사람의 비율은 채 1%가 되지 않으니 사법연수원 수료도 부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이렇게 사법시험이 중요한데, 그 응시자격으로 대학에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법과대학의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교과목과 교육방법을 동원한 심도 있는 강의는 오히려 학생들의 기피대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험 합격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법학교수들은 다른 아닌 ‘대학’에서 객관식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시험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 의원께서 안타까워하신 ‘대학 교정에 나부끼는 사법시험 합격자 현수막’은, 법학교수들이 “자랑”하거나 “축하”하기 위해 내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뒤틀린 ‘구조’에 의해 강요된 “부끄러운 한국 교육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대를 졸업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법대를 졸업해야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든 현상적으로 볼 때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professio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률가만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험에만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핵심인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일본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일본의 법과대학원[일본의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법과대학원입니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람직하고 다양한 변화들은 실상 법과대학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아닙니까”라고 단언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 배우고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시험으로만 법률가자격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한국·대만 정도입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지난 오랜 세월동안 법학교육 개혁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바람직하고 다양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교육과 자격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자 곧바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숫자만 늘려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 의원님의 답신에서 다음으로 눈길을 끈 것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로스쿨 지지자들도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문제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숫자만 늘려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1981년에 그 때까지 100명대였던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300명으로 늘였습니다. 그 결과 2%대였던 합격률이 3%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약효’는 3년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4년째인 1984년부터 다시 2%대로 떨어졌고, 14년 후인 1995년에는 1.4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996년부터 매년 증원을 해서 2001년에는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의 증원은 폭이 컸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2005년에는 4.64%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격률이 원상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숫자에만 매달렸던 일본의 경험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게다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숫자만 늘리면 새로운 문제도 생겨납니다. 법학 이외의 학문을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사법연수원생 중 비법학 전공자 비율은 사법시험 합격

자 정원이 700명으로 증원된 1998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30% 전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 로스쿨 반대론자들은, 이 현상을 ‘이미 다양한 전공자가 법률가가 되고 있으니 로스쿨은 필요없다’라는 주장의 논거로 동원합니다. 하지만, 비법학 전공자가 시험공부만 해서 법률가가 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법률가가 늘어났다는 것이니,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법률가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가의 숫자는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 것이지, 국가나 특정 집단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를 등에 업은 법률가집단이 자신들의 숫자를 스스로 정하는 뒤틀린 구조를 고수해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름 아닌 일본의 변호사연합회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법조인구는 본래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 시민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조인구를 법률가들만에 의해 통제하는 시스템은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당초 국가는 변호사의 숫자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의 숫자를 국가가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소외 계층이나 소외 지역에도 법률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호사의 최소한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변호사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숫자를 통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내걸고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적정 변호사 숫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

니다. 변호사가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연간 600명으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대한변협의 낮 두꺼운 주장은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적정 변호사 숫자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동원하는 변수에 따라 2,000명에서 8,000명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곧 적정 변호사 숫자는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사전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늘리자라는 주장은, 법률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정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선행시킬 수는 없으며, ‘구조’를 바꾸는 결과 숫자가 사후적으로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겨나고, 그 교육기관의 졸업자가 법률가자격을 얻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숫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그것이 “학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도 지금의 법과대학교육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통째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

격한 인적·물적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제시한 법률안에 담긴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서, 그것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의 90% 이상과 일본 법과대학원의 70% 가까이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년 마다 자체평가를 해서 공표해야 하고, 5년 마다 외부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바뀝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갓 해방된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성숙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법률가가 되었을 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법학교수들은 그들의 엄격한 평가를 받으며 그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통째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바뀌지 않던 일본의 법학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학교수가 제도의 요청 때문에 현저하게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다가 과로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의 정도는 제도가 어떤 내용으로 도입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200명 정도로 해서 도입하게 되면, 입학하는 것만으로 이미 ‘극소수의 특권적인 변호사’의 지위를 보장받은 학생들이 그저 졸업 학점만을 채우는, 그러한 극소수의 특권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날 뿐일 것입니다. 거기에 입학하려는 ‘입시낭인’들이 양산될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학원’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고 문제는 그대로인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스쿨’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을 옹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로스쿨’은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 입학정원이라는 숫자의 통제는 애당초 ‘로스쿨’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학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도, 사실상 설치‘기준’이 아니라 총 입학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뒤틀린 제도구상 때문에,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총 입학정원이 설정한 등수 내에 들기 위한 ‘선착순의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된 결과입니다.

사회인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공정성·개방성·다양성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도입한 ‘야간 로스쿨’과 ‘통신 로스쿨’은, 총 입학정원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힌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총 입학정원제도의 배제를 거듭 요구해 온 것도, 법학교수들이 ‘로스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정원을 요구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우월한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글을 읽으셨으면, 아마도 ‘구조의 개혁 좋다, 그런데 그 것을 왜 대학원과정에서 해야 하는가, 학부 단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학교육을 이수도록 하고 일정한 정도의 학업성취를 달성한 모든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제안을 하신 최 의원께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학부 단계에서 법학교육과 법률가 자격을 연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경우가 제도 전환 비용이 더 적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여

러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제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가르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해결자로서의 법률가에게는 역사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장점의 의미는 매우 큼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실 적합성도 더 뛰어납니다. 그것은, 학부과정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폭넓은 교양에 주력하게 하고, 대학원과 정에서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우리 교육체제의 지향방향과 더 잘 부합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힌 대학 법학교육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학교육 개혁론자들의 바람에도 더 잘 합치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될 법률가 숫자의 증대에 대한 법조의 우려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도 더 잘 호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보다 낫다고 판정을 받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1995년과 1998년의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학부 법학교육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2000년대의 논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이 넘는 논의의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대적인 우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최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 의원님의 제안이 로스쿨 지지자들의 그것과 충분히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논의가 부족하다’, ‘확신을 달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를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사안에서도 논의의 충분성은 결국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의 ‘로스쿨’ 논의는 지금까지의 어떤 논의보다 상대적으로 충실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수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과대학들과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수많은 공청회·토론회의 자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미 1년 전에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률안이 있고, 법학교수들이 만든 대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라면 또 모를까, 국회로부터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솔직히 민망한 일입니다. 입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마땅히 그 모든 논의과정을 이미 되짚어 본 상태에서 개정안을 내든가 아니면 정부의 법률안에 필적할만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자세한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거나 적어도 지금은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다양한 현실적인 요소를 배려하면서 다수의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기 마련인 입법과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의 선택은 우열의 판단이지 진위의 판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는 100%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선택에는 100%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이신 최 의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시낭인’으로 상징되는 문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의 높은 파도는 곧 들이닥칠 기세인 지금, 노무현 정부 내내 논의를 거듭해서 법률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개혁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보내는 것

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제의 골이 깊고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률가 양성 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최 의원께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11일

김창록 드림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²⁵⁾

- 변호사 정원제 폐지의 요원함과 절실함 사이의 유일한 타협, 로스쿨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교수)

최 순영 의원님²⁶⁾의 답장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다운 지식, 논리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셔서 저희 참여연대의 간사 한 분은 이런 의원님이 계신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식견만큼 다행스러운 것은 의원님께서도 국민들에게 더욱 공정하면서도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제시하신 비전은 단지 우리의 목적지만을 제시할 뿐 목적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며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스쿨 제도는 대한변협, 법원 그리고 검찰이 사상 최초로 변호사 정원제를 폐지할 것에 동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변호사 정원제의 전(前)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 정원제의 위헌성

25) 이번 편지는 본책 44쪽에 실린 박경신 교수의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에 대해서 본책 117쪽에 실린 최순영 의원이 보낸 답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에 대한 박경신 교수의 재답신입니다.

26) 2006년 12월 현재 민주노동당 제 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을 밝히는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 박경신, 이국운,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법과사회 18호, 299-339쪽)

그러나, 곧바로 최 의원님은 로스쿨 총정원이 존재하는 한 변호사 정원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최 의원님이 로스쿨 제도가 “법학교육을 더욱 왜곡할 것”이라거나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로스쿨 제도의 입법화 이후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현재 대한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1,200명 선에서 고착된다면 저도 로스쿨제도가 개악(改惡)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로스쿨 입시과열, 등록금 인상, “귀족법학교수”의 탄생 등의 폐악을 감안하고 사회가 엄청난 거래비용을 들여 제도를 바꾼 후에 다시 제도를 고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로스쿨 제도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 로스쿨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법학 교육 방식들도 시장(市場)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한 형태로 도입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론식 및 사례식 교육 방식들은 실제 판례에서 적용되지 않는 한 수업시간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 정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市場)이 바뀌고 교육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교육은 다시 변화된 시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교육을 학사과정 이후에 실시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을 배출할 것이고, 또, 현재의 사법연수원으로 집중된 교육 과정을 여러 개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더욱 다양한 변호사들을 배출하여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담합구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정원제가 폐지되어야만 더욱 다양한 성장배경 및 학력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즉자적으로든 대자적으로든 하급심의 상급법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판결문의 일반적 공개, 판결문을 통한 법적 논쟁 등이 전개되어, 새로운 법학교육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변호사 정원제로 모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정원제는 법학교육개혁의 최소요건이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숫자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다르다고 하지만 시장이 바뀌지 않고 교육이 바뀐다는 것은 상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주는 복습장으로 변한 초·중등학교와 옛날의 본고사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대입논술고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바로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로스쿨 총정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바로 그 장관을 감독하는 교육위원회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과 인적·물적으로 얽여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던 변호사 정원과는 다른 양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 로스쿨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변호사 증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법조계가 지금처럼 극렬히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로스쿨 정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변호사 정원제는 폐지되어 최소기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되므로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로스쿨 총정원의 증가라는 확신할 수 없는 가능성에 기대어 고비용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 정원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와 크기를 이해한다면,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 일어난 후에 반드시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최 의원님께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우회로를 이야기 하시기 전에 현재 학부의 법학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도입

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강력하게 피력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시지만 이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하건대 첫째, 시장을 바꾸지 않고 교육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째, 로스쿨 제도를 계기로 삼지 않고 변호사 정원제의 폐지(즉, 변호사 자격시험의 도입)를 말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변혁은 이상만을 더 크게,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주는 작은 기회들을 하나하나 적립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탈 수 있는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전진에도 열정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준법운동에 온몸을 던졌던 전태일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최 의원님은 ‘모든 것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계신 이유가 변호사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변호사 교육의 민영화를 동반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최 의원님이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개방 되어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에 따라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경쟁하기 위해 스타들의 독점 이윤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아마도 최 의원님이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분류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통해 지불하고 있는 변호사 양성 비용을 -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한 푼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 개인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님이 노회찬 의원님에게 보낸 서한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국가는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계속 변호사양성에 공공자원을 활용하도록 정책적인 준비를 하면 됩니다. 또, 변호사들의 최소한 16%는 사회취약계층 출신으로서 등록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0%는 사회취약계층 출신으로 보장됩니다. 최 의원님은 이 숫자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극소수의 상위계층 자제들 이외의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록금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폄하하셨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의 변호사들 중에서 사회취약계층 출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며, 과연 장애인들 및 극빈자들에게 10%의 쿼터, 그리고 20%의 장학금의 의미가 그리 작은 것일까요?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현재의 산술적 다수(多數)의 복지인가요, 종속 및 상하관계가 용해되어 취약계층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가요?

로스쿨을 구태여 분류하자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정태욱, ‘정치와 법치’ 참조) 여기서 공공의 영역이란 정치표현의 자유가 공익과 동일시되어 보호된다는 의미이며, 로스쿨 제도를 통한 정원제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재판을 통해 주의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활동을 직업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주의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구시대의 특권을 해체하거나, 과거에 짓밟혀 왔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거나, 경쟁의 틀을 공정하게 다시 짜주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아니 한국이 아무리 사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변호사 숫자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그 목표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2006년 12월 15일

박경신 드림

답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 2006.11.23

* 이 편지는 본책 44쪽에 실린 최순영 의원께 보내는
박경신 교수의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보낸 답신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관 새만금사업’으로 전략을 우려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으며, 특히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법학교육의 개혁과 법률가 양성과정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적과 공감이가 형성되었던 반면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분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여러분들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내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구조는 여러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 오히려 법학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득권의 해체가 필요한데 법

학전문대학원은 오히려 그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볼 때, 저는 이번에 한겨레와 함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과정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음에도 이를 다행으로 여기며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개위나 사개추위에서 진행되어왔던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억측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안타까워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들이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교육구조를 왜곡할 것입니다.

(1) 교육자들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新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선례를 보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향간의 여러 논의를 보면서 과연 일본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는 행태가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논쟁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따져 보아야할 무엇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한 이래, 일본 법학교육과정에서 많은 것

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선수 변호사께서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사이트에 올린 글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법학 교육수준이 제고되고 교육과목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의는 토론 등 쌍방향 형식을 취하여 학생들이 예습을 하지 않으면 강의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법학교육과정이 개선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인터넷 한겨레에 올린 안상수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법학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과목이 도입되고, 리걸 클리닉 · 엑스텐션 쉼 · 모의재판 등 임상법학교육이 도입되고”, “교수들 또한 사회인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받으면서, 매주 강의에 관한 교수회의를 열고, 방대한 양의 법률문헌과 판례를 갖춘 인터넷 교육 연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와 법학 전문서를 출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일본법학교육의 변화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매년 때만 되면 각 대학교정에 걸리는 사법고시 합격생 축하 현수막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폐인처럼 고시원에 틀어박혀 사회와는 담을 쌓은 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대학 교정에는 사법고시 2차 합격생이 발표될 즈음이면 자교 출신 합격자들의 이름이 박혀있는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교 법학과와 자랑, 더 나가서는 그 대학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을 볼 때마다 과연 저 현수막이 교정에 나부끼는 것이 누구의 자랑이며 누구를 축하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현수막에 걸린 학생들 중에서 정상적인 4년 간의 대학교육만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더 직설적으로 묻자면 우리 법학 교수님들 중 내가 가르쳐서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국 법학교육의 메카가 신림동 고시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사법고시에 뜻을 둔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에 전념하기 보다는 일찌감치 사설 고시학원으로 달려가 수험준비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어 정상적인 법학교육과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람직하고 다양한 변화들은 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어야 할 일들이었고, 법학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방식이 그렇게 되었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갖다 바치는 존재로 전락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미명 하에 기초교육은 황폐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지성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학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도권 교육 안에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많은 학생들이 미련 없이 학교를 등지고 신림동 고시원에 안착합니다. 학교는 졸업장을 위한 근거일 뿐, 그들이 원하는 사법고시의 합격에 필요한 자원은 결국 사설 학원의 강사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청운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고시생의 길을 감수합니다. 법전과 교과서와 학원교재에 파묻혀 가장 찬란히 빛나야 할 청춘의 한 때를 폐인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되게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논하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왜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왜 그동안 이렇게 훌륭한 교육방식을 대학 안에 도입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교수사회에서 분출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정마다 걸려 있는 사법고시 합격생들의 명단은 그래서 학

교의 자량이 아니라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이며 부끄러운 한국 교육의 자화상일 뿐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현상을 자랑스레 현수막까지 찍어서 교정에 내걸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자들의 자가당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야만 법학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현재 학부체계의 법학교육을 개혁 하자는 주장을 하셨더라면 그 충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없이 학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교육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과과정의 변화나 구성원들의 자세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 대학은 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한 입시학원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교육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갈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교육계에는 여러 전문대학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한국교육의 왜곡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산맥으로 문과에서는 법대, 이과에서는 의대를 꼽습니다. 당연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대학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똑같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어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과계열의 대학교육은 과연 정상화 되고 있을까요?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됨으로써 의대에 편중된 입시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되고,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할 수 있는 관련학과의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에 편중된 입시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쉬운 학과들에 학생들이 몰리는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분야의 학과나 생물, 화학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학과 학부의 교육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전초기지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의대 이외에 다른 분야의 학과에 학생들이 의욕을 가짐으로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발전이 도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용이한 학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학과의 입시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과연 교육정상화의 일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대에 편중되는 교육수요가 모든 인문사회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영역 전체에 고루 교육수요가 확산된다는 낙관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을 교육정상화의 단면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관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전체 인문사회영역에 교육수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학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학교만 법학부를 없애도록 되어 있을 뿐 그렇지 않은 학교는 현행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문사회영역에 교육수요가 확산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전체 인문사회영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요?

또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공 학과에서 취득하는 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정상화된다는 것 역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자기 전공을 뺀 채치고 사법고시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전공학점취득에 열을 올리는 것과 진정 자기 전공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길로 여기면서 전공학점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지 입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하기 싫은 과목, 관심 없는 과목일지라도 전공학점을 따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진행한 학습이 과연 얼마나 교육정상화라는 대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학부전공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이 이루어진다면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연 환경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의학전문변호사를 특화하여 양성할 수 있을까요?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해 과묵한 저의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양성과정은 들어본 바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이처럼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건 어떤 체제건 간에 법학교육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의 특정 법조인을 배출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법학부가 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이 되었던 간에 교육과정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통된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고, 특정 분야에 뛰어난 법조인이 되는 것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법조인이 탄생하기 위한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특정분야의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과정에서 법대가 없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서조차도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학부전공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며, 바로 그런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다른 형태의 고시낭인들을 배출합니다.

2002년도에 사법시험 응시자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998 명이 합격을 했고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불과 3.61%에 불과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법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의 숫자가 몇 만명이나 되는지 추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사법고시 합격의 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며 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그 결과 소위 말하는 ‘고시낭인’들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법고시의 합격이 전격적인 신분상승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과거급제를 하는 것과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즉시 “출세”한 것과 동일시되는 오늘날의 이 현상이 사법고시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임은 채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고시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문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완전히 혁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고시촌에서 맴돌고 있는 ‘고시낭인’들을 법학전문대학원 근처로 끌어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은 물론이려니와 기존에 사개위 및 사개추위에서 논의되었던 바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고,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누구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골간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다시 말하자면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 = 변호사”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한계로 인해 변호사 인원에 대한 논쟁이 입학정원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변호인 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측이건 늘리자는 측이건 입학정원자체에 일정한 제한을 두자는 전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형식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 현재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고시낭인’들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학정원의 한계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현행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준비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학부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수험준비를 하게 되고 혹은 더 나가서 대학에서 충분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다시 사설학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 전체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준비학원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는 입시생들의 처연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대학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대학졸업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점을 줄여 등록하거나 아예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대학교육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길게는 몇 년씩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그 때는 이들을 ‘입시낭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림동 고시학원은 한 달 간격으로 수강료를 내기라도 하는데, 한 학기 단위로 등록금을 내야하는 이 학생들의 비용부담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빛나는 20대는 물론이고 한창 일해야 할 30대 마저도 고시합격을 위해 ‘고시낭인’이 되는 것을 마다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현재의 풍토를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의 결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홀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나

서야할 문제로 전환되었음을 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이 ‘고시낭인’을 ‘입시낭인’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만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원죄가 될 것입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다른 기득권의 양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조의 문제는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한 쪽에서는 우리 사회에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변협을 중심으로 이러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무작정 변호사만 늘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술한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겨우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 당장 생계곤란까지 겪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연간 1천명 가량 충원되는 사법고시 합격생들의 숫자조차 많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인의 숫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충분한 충원이 이루어져야할 만큼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생각처럼 송무 업무만을 변호사 업무의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현재의 변호사 수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으며, 향후 경제규모의 증가 및 법률 전문 인력수급의 사회적 요청급증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변호사 충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법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기타 사회 각 영역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서 활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시급히 개설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의 견해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서 저는 극히 소수의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시장의 독점현상이 우리 사회의 법률구조가 지금과 같이 왜곡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가침의 독점구조를 깨트릴 때, 이 사회에서 “유

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자조어린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총론적 과제 역시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특정집단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기득권을 타파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사법실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박경신 교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정치 지형상” 변호사의 증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사법고시제도를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양성의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저의 견해에 대해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있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왜곡된 현재의 법률구조에 대해 저나 민주노동당이 “사법시험 정우언의 증원에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박경신 교수께 반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법학교육의 현장에서 왜곡된 법률구조로 인한 고통을 가장 격렬하게 겪으셨을 법학교수 여러분께서 과연 얼마나 자기 제자들의 미래와 이 땅 사법구조의 개혁을 위해 처절하게 법학교육의 개혁과 법조기득권 타파를 위해 애쓰셨던가요? 누구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바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선두에 서서 투쟁할 때에 그러한 요청이 일반의 동의를 얻고 대중들의 연대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경신 교수님의 글에서는 법조기득권의 폐단에 대한 절절한 분노와 함께 이를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로 이러한 분노를 가지신 분들이 법조기득권에 대한 전면적인 항의를 앞에 걸고,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우회로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현재 학부의 법학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도입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강력하게 피력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현장의 요청이 선행되고 이해집단간의 상충되는 주장들이 공론의 장에서 소용

돌이치게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분명한 입장이 개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조인양성과 법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권교체기마다 하나의 화두처럼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고, 지난 YS정부 이후 소위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각 위원회 내에서만 설왕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개혁”이라는 등식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고 어떤 이유에서든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개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사법제도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건 또는 평생 법 없이 살 사람들이건 간에 어떤 제도가 좋은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도 제대로 갖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유포된 “법학전문대학원=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반대=반개혁”이라는 왜곡된 구도를 사실관계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은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소수의 법조기득권을 타파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법조기득권을 타파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조기득권의 문제들을 낱알이 드러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변호사의 증원이 왜곡된 법률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작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의 일선에 서 계신 여러 교수님들이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라면 언제 어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다른 기득권집단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정 개편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기득권을 가진 법률가 집단의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보다는 오히려 또다른 기득권 집단을 양산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즉, “사법고시→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현재의 기득권 취득구조 하에서 독점적 법률서비스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2중의 기득권 구조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법고시→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현재의 기득권자

들의 권력을 일정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4년, 국립은 연간 800만원, 사립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남발한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게 각종 기준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규모는 일본보다 더할지는 몰라도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2천 만원에서 4천 만원의 연간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약 2천 만원에서 4천 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실 많은 대학들도 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학비부담을 감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일지 너무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박경신 교수께서는 이러한 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를 들면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쿼터(quota)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겠다. 둘째, 충분한 장학금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얼핏 보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쿼터제나 등록금제도의 도입을 기존 대학의 학부수준보다 조금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정도의 취약계층 쿼터제를 말씀하셨고, 이는 현행 대학에서의 농어촌 특별전형 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4%입니다. 현재의 대학입시에서의 특별전형 방식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쿼터가 실제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정책적 알리바이 형성의 수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박경신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쓴다”고 하

신 부분에서 이 제도가 가지는 위험성의 일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전면 내 걸었던 바가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비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등록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박경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일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극소수의 상위계층 자제들 이외의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록금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별히 우대를 하고 있어 ‘결과의 평등’까지도 일부 보장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외람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을 들여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높은 수익을 바라지 말고 공익적인 분야에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봉사해줄 것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돈을 벌어 그동안 투자했던 등록금과 등록금을 내기 위해 받아야 했던 은행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혜택’을 입은 일부 사회취약계층출신 학생들에게만 서민을 위한 공익적 변호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비용은 그대로 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외면과 상류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편향된 법률서비스의 제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걱정을 과도한 기우라고 치부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하며, 그들이 학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에 가난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충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전혀 그러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상에서 언급한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부가적 지출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사교육시장의 등장 등 교육비가 소모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입니다.

박경신 교수께서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혹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십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민주노동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박경신 교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박경신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변호사 숫자만을 늘어놓으려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편집자 주 - 박경신 교수의 원문에는 ‘자유주의’라고 되어있음)라고 비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가가 변호사 숫자와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 직업교육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기는 것도 ‘신자유주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민주노동당이 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장황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박경신 교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변호사를 다수 양성하자는 민주노동당의 당론 역시 신자유주의의 한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의 확대를 통해 법조기득권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변호사들이 일정한 경쟁구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판단

역시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절기능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은 “국가가 변호사 숫자와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는 현재의 체계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다른 분들과 그 취지에서는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법학교육이 ‘사립대학’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를 ‘민영화’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설립을 민간이 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당연히 공교육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립대학에 설치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학교설치를 두고 민주노동당이 ‘민영화’라고 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단지 ‘경쟁구도’를 통해 국민들이 알아서 법률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알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률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일정한 정도의 학업성취를 달성한 모든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면 여러 가지 유익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실 고시학원을 배회하게 되는 ‘고시낭인’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조속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출된 변호사들이 단지 송무 업무에만 모두 매달려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비용의 투자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법학교육의 개혁과 법조인 양성과정의 개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방되어가는 법률시장

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에 따라 계획된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의해 설립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면상의 취지와는 달리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인적자원’을 양산한다는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부터 이 경제논리는 충실하게 관철됩니다. 비록 ‘사회취약계층학생’들에게 일부 지원을 할지라도 애초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 위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고비용의 법학교육을 마친 다음 결국 기업이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서의 법률가가 되어 그들의 경쟁력을 살 수 있는 계층의 이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은 황폐해지게 되고, 법률전문가는 다만 법 실무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기능위주의 사고방식이 가져올 결과는 일반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까지도 왜곡시키면서 오직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적자원’만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일반 법과대학원과정을 두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일반 법과대학원과정을 두든 간에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가지는 동기부여가 큰 상황에서 일반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만난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지하는 여러 교수님들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논리 안에 인간성마저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분연히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신 교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외면한 채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든 사민주의든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할 것이라면 자유주의든 사민주의든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박경신 교수의 원문이 잘못 전

달된 것임) 저는 이 시대의 지성인 법학 교수께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설령 그 폐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성인들이라고 볼 때, 박경신 교수님의 이와 같은 발상은 저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이해가 합치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를 언급하면서 “신자유주의라해도 좋다”는 발상을 하는 것을 과연 전태일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할 것이라 하면 자유주의든 사민주의든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박경신 교수의 원문이 잘못 전달된 것임) 박경신 교수께서는 “전태일이라면 로스쿨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하시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산화한 전태일이 오늘 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사법개혁논의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또다시 심각하게 자신의 몸을 사릴 것을 고민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 전태일의 이름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을 위해 거론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불쾌한 일입니다.

3. 더 많은 논의와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이 발표된 이후 각 대학이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총 2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각 대학이 앞 다투어 시설확충과 교수충원에 재원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대학들이 왜 그동안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법학만이 아니

라 다른 모든 학과는 이러한 개선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대학의 투자는 그대로 등록금의 인상으로 반영되기 십상입니다. 시설의 확충과 교수의 충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분명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고민해온 저는 그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하는 반면 바로 그 돈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해마다 엄청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겠다고 대학이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돈이 있었음에도 돈을 쓰지 않았던 것이거나 반대로 빚을 내서라도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면 관행처럼 학생들에게 엄청난 등록금을 받음으로서 얼마든지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가 아니었을까요? 전자건 후자건 사실이 그렇다면 대학은 신랄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 와중에 그 많은 돈이 투여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대학들이 국민과 학생들을 속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상아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각 대학들이 자기 학교에 설치한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육 자체가 건강하게 된다면 법학교육 역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느낀 두 번째 우려는, 이처럼 기 투자된 비용이 천문학적임에 따라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봐야한다는 압력이 각 대학으로부터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쏟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문제가 있건 없건 하던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어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새만금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 너른 바다

를 막아 농지를 만든다고 했던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사를 위해 투자된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공사는 강행되었고 그 결과 우려하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논란의 와중에 이러한 현상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각 대학들이 투자한 비용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자는 압력이 거세질 경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교육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계획되어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계획을 현실화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모든 우려들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법학교육관 새만금 사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내용을 공론화해서 전 국민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각 의원들에게 서신을 띄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이 과정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률가 양성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에필로그

로스쿨지지자의 글에 대한 네티즌 반응들과 재반론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교수)

로스쿨지지자의 글에 대한 네티즌 반응들과 재반론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교수)

로스쿨지지자들의 편지 시리즈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냉정하게 양면적이었다. 법률시장의 독과점 폐지와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강화에 대한 전(全)사회적인 동의를 확인하는 한편, 위와 같은 전 사회적인 동의를 가지고도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열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부동산, 입시과열, 비정규직노동자 등등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 있지만 해결책에 있어서는 아무런 동의 없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다른 많은 사회문제들처럼... 로스쿨지지자들의 편지 시리즈가 실린 인터넷한겨레 웹페이지에는 "변호사 정원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로스쿨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댓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 변호사, 비법대 교수, 법률소비자, 고등학생 - 의 입장들도 대변하고 있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변호사정원제의 폐지나 증원이 중요하지 로스쿨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ID : iroquoiss] 정원제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금 현 제도로 변호사 많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어휴~~~ ㅎㅎㅎ

[ID : poporo21] 지금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법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는 것이 문제지 로스쿨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로스쿨이 없어도, 의사면허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붙는 것이 쉬워진다면 학부과정에서 복수전공 등이나 편입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굳이 비싼 로스쿨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현행 사법시험에서 합격자수를 2천명 정도로 확 늘리되, 법과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게끔 단계적인 진입제한을 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로스쿨이 문제는 아니다. 변호사 배출인원이 문제지. 그리고 무한경쟁이 문제다. 차라리 법대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주고, 졸업 후 몇 번만 시험 치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낫다. 이런 문제는 현실과 경험을 두고 이야기해야한다.

[ID : dla2138] 1. 로스쿨이 시행되면 사법준비생은 사라지겠지만 로스쿨준비생이 등장한다. 2.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수는 극소수일 뿐더러, 졸업 후 쏟아부은 학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인상은 분명하다 (의료보험처럼 법률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3.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시인원을 1천명이 아니라 3천명으로 늘리면 될 것이다

[ID : sanbon88] 어쨌든 국민 모두에게 법을 익히는 동기부여를 하고, 또 국민 모두가 자기 능력만 있다면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로스쿨 하에서만 법학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개선되고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근거가 없다"

[ID : mhcha] 로스쿨 지지자들 논리는 왜 개혁인지 근거는 없고, 미국 일본에서 하고있고, 오래 논의 되어 왔다는 게 근거야.

[ID : brio17] 왜 로스쿨이 개혁의 핵심인지 이유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면 개혁입니까?

[ID : lunar48] 3년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취지 - 편집자 주)/ 로스쿨의 경쟁력이란 게 학부4년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ID : bohmee] 15년 전에 엔지니어인 피고보다 법률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판사와 양쪽 변호사를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사시가 암기력 시험이 아니라니요. 그들 모두 실력파로 알려진 명문대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요? 합격권에 근접했다는 연대 출신 고시생과 법에 대해 대화했는데 한숨만 나오더군요.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 3년 경력 없는 타 전공 학생들 뽑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ID : sabuza] 로스쿨이 창의력을 키운다?... 3년간 돈으로 쳐바른 로스쿨로 변하면 천지가 개벽해서 3년간 기본법과목도 숙지하고 추가로 창의성을 키우고 다른 특화된 법률지식도 습득한다냐? ..

3. "로스쿨은 '로스쿨교수'라는 특권층을 다시 만들고 이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양성의 진입장벽을 높일 뿐이다"

[ID : ks77sjy] 사법개혁은 법조인, 법학자, 법대생, 고시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된다면 안 되고,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시생들 비용 줄여주기, 기존 법조인들의 밥그릇 지켜주기도 초점이 아니고, 법대 교수들 자리 늘려주기 등도 초점이 아니다.

[ID : josepin1] 대학교수들이 로스쿨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ID : sds101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마시고....

[ID : marine13] 로스쿨 지지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로스쿨 도입 시 유리한 일부사립대학들, 자식들 돈으로 유학 보낸 좀 되는 사회계층들, 이미 가진 자격증에 특권을 더 보태려는 특권 독점 지향자들, 사법시험 안 된, 로스쿨 교수 직함 거저 먹으려는 자들이다. 아래와 같은 자들로 구성될 로스쿨과 공개시험의 일종인 현 사법시험의 보완 중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사회적 이동 수단의 공정성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되는지는 너무 자명하다.

[ID : a7160] 교사나 교수들 밥그릇을 위해 쓸데없이 교육과정을 늘려 놓은것에 지나지 않잖아??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때.....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

물론 이외에도 변호사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으나 ([ID : lunar48] "과연 변호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인가? 도리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소송만 남발하는 것이 아닐까?"

의 답은 그냥 "그렇다"이다. 그 다음 주옥 나열한 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ID : gnoeym] "로스쿨 해보라. 법과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할 것이다. 미국과는 다른 것이 바로 이 나라이다. 미국은 뭐든 법으로 해결하지만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다. 왜!!!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왜!! 자꾸 더 만들자는 것인가. 그저 법을 가진 권력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다 또 강남 부동산 잡다 전국 땅값만 올린 꼴 난다.")

이는 아주 소수의 네티즌이 여러 글들을 올린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위의 세 가지 주장

은 로스쿨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에 유일하게 답변을 썼던 최순영 의원이 주장했던 로스쿨 반대론과 일치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첫째, '정원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로스쿨은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현실과 변호사 정원제의 폐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정원제는 한국사회의 서열화, 지역이기주의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가부장제, 대학교육의 피폐화, 인문사회과학의 경쟁력 약화, 폭력 너물 친소관계 등에 의존하게 되는 분장해결 경향...이 자리에서 이루어 말할 수 없으며, 수많은 사법개혁 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 정원제 폐지라는 최소필수요건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 정원제를 폐지하는 일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는 대한변협, 법원 그리고 검찰이 사상 최초로 변호사 정원제를 폐지할 것에 동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²⁷⁾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로스쿨 총정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고 있다...지금까지 변호사들과 인적·물적으로 얽여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던 변호사 정원과는 다른 양태로 운영될 것이다. 또, 로스쿨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변호사 증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법조계가 지금처럼 극렬히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된다... 혹자는 로스쿨 총정원의 증가라는 확신할 수 없는 가능성에 기대어 고비용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호사 정원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와 크기를 이해한다면,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²⁸⁾

27)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박경신, 본 묶음집 41쪽

28)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박경신, 본 묶음집 104쪽

둘째, '법학교육의 개선은 로스쿨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고비용 제도 로스쿨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전문과목이 도입되고, 리걸 클리닉? 엑스텐션? 모의재판 등 임상법학교육이 도입되고, 끊임없는 질의와 응답으로 이어지는 긴장도 높은 수업방식이 도입되고... 법조윤리에 대한 관심과 법조직역에 대한 동기의식이 높아지고, 방대한 양의 법률문헌과 판례를 갖춘 인터넷 교육연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와 법학 전문서를 출간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창록, 26쪽)"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왜 한국에서는 현재의 법과대학 하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가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시장' 없이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교육의 변화는 현재와 같이 암기력을 통해서만 변별력이 얻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정원제 정원제 하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면 로스쿨을 통한 정원제 폐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가능해진다.

법학교육의 변화는 몇 개의 국영 또는 민영교육기관들 간의 경쟁이 사법연수원의 독점을 대신한다고 해서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대학원 교육이 대학의 법학교육을 대체한다고 해서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그나마 반쪽의 성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로스쿨 인가에 있어서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많은 숫자들의 로스쿨들이 더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또는 더 합격가능성 있는 로스쿨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새로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마 수년 내 정원제의 폐지나 적절한 증원을 통해 교육의 결과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폐쇄된 시장의 기운은 다시 교육을 마비시킬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다시 사법시험은 암기력 및 변별력 위주의 고(高)경쟁시험으로 바뀌면 다시 로스쿨 교육은 이에 따라 입시학원 중심으로 퇴화될 것이다. 결국, 정원제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일본의 로스쿨 도입은 '반쪽의 성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올바른 법률시장이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의 경우에는 로스쿨의 인가에 있어서의 준칙주의 도입에는 실패하였지만 도리어 사법시험 정원제 폐지의 단초를 열어놓았다. 이제 로스쿨들은 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법학교육 방식에 투자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라는 상품이 좋은 것은 '좋은 교육'이 포함된 '구성' 때문이 아니다. 변호사 정원제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착근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총정원이 통제되는 초기에는 '로스쿨교수'라는 특권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로스쿨이라는 통과의를 빌미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걷으며 치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주장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현재까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확대시켜보면 로스쿨 교수들의 치부가 시작되면 이 지대(rent)를 지키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도리어 변호사시장에 진입장벽을 높게 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법안은 로스쿨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로스쿨 총정원의 숫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맡기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로스쿨 교수들 사이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들 사이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견제와 감시'의 관계라는 것은 수많은 개혁 논의를 두고 충돌을 거듭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일반 교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로스쿨교수'라는 특권층의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현재의 로스쿨 법안을 보완하거나 로스쿨 법안 통과 후에 총정원 결정 및 학교 인가 시점에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법률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원 및 인가 결정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별도로 추출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비용'의 문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생활비 등을 모두 제하고 학원비와 학교등록금 만을 비교하였을 때 틀림없이 현재 3

년간 1 천 만원 수준에서 수 천 만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현재 국가는 이미 사법연수원생에게 월급을 주며 교육시키고 있고,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 및 공과금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월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즉, 국민 전체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고액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라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부담하기를 바래왔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사법연수원 유지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²⁹⁾

물론, 서비스의 수익자부담원칙도 기본 부담이 너무 높으면 부자들만이 그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나, 현재 입안된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학생의 20-30%는 무료로 로스쿨을 다니게 될 것이며, 이중의 80%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재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은,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로스쿨인가기준에서 위의 수치까지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인정 해주기로 하고 있음). 과연 몇 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입학까지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현재 몇 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또, 예정된 정원제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로스쿨 입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금의 법과대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로스쿨 입학생은 어느 정도 은행이나 다른 재원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기존의 사법연수원 유지비용을 로스쿨 학자금 지원으로 전용하여, 로스쿨이 자가로 운영하는 장학금을 보완할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로스쿨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로스쿨지지자들의 주장에 사회의 반응은 로스쿨이 '변호사 정원제 폐지'라는 보석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무관심이 있다. 로스쿨 제도를 단지 '사법연수원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여러 학교

29)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한상희, 본 묶음집 83쪽

에서 나누어서 실시하고 학부교육을 대학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로스쿨 제도는 사상 처음으로 법조4륵이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사법개혁 플랫폼으로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와 보완을 해나갈 때 로스쿨을 포함한 수많은 사법개혁안들이 수정기둥처럼 자라날 것이다.

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2005.11.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 공청회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2004.4.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2005.11.03

참여연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정부가 확정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임

I.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필요성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기본틀

- 현행 법률가양성제도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간의 실
무연수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1972년부터 2005년까지 34년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9,656명 중 수료자는 9,573명으로, 그 탈락률은 0.86%에 불과함

- 따라서, 보다 핵심적인 것은 사법시험임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2-1) 합격자수의 통제

- 현재의 사법시험에서는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는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법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1978년까지는 100명 미만에 머물렀고, 1981년부터 1994년까지는 약 300명에 머물렀으며, 1995년 이후 점차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 1,000명에 머물러 있음
- 법조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통제는, 법조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작은 상태에 묶어둠으로써, 국민들의 법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법조인의 총수는 2005년 8월 현재 10,768명에 불과함
 - 이것은 국민 4,484명당 1명의 법조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법조인 1인당 국민 숫자는 미국의 약 17배, 영국과 독일의 약 8배, 프랑스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조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통제는, ‘희소가치’를 가지는 법조의 특권을 담보해줌으로써, 법조를 현대판 특권계급으로 만들고 있음

2-2) 제한 없는 응시자격

- 현재의 사법시험에서는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연령, 국적, 학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사법시험 응시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이중으로 왜곡되고 있음
 - 한편으로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가르치는 다수의 법학과목들이 사법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로부터 의면당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시험 합격에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교육’으로 전락하고 있음
- 응시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복합적인 소양과 자질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 단순한 암기의 능력을 점검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음
- 사법시험 합격이 절대적인 과제인 법조인 지망자들은, 시험에 특화된 고시학원에서 몰려 정답을 외우는 기술의 습득에만 몰두하고 있음
-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암기능력을 점검하는 시험준비를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는 구조 속에서, 법조인의 ‘전문가’(legal profession)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3) 제한 없는 응시횟수 및 응시기간

- 현재의 사법시험에서는 응시횟수와 응시기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
- 응시자는 많은데 합격자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사법시험은 매우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어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법조인 지망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있음

- 1963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단지 2.54%만이 최종적으로 합격했음
- 1983년부터 2005년까지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28.89세임
- 법조인 지망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게다가, 암기 중심의 시험공부만 한 법조인 지망자들은 30세 전후의 나이에 시험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다른 직역에 진출할 수도 없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음

3)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

- 애당초 사법시험이 판검사 선발시험이었다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법연수는 판검사 연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결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70% 정도가 바로 변호사로 진출함에도 변호사연수는 옳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연수는, 연구와 교육의 경험이 없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순환보직의 형태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소양과 자질 및 다양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조 직역의 한정된 관점과 시각만을 전달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사고를 획일화·정형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한정된 수용 능력이 법조인 증원을 막는 구실이 되고 있음

2. 새로운 시대적 요청

-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종래 거리에서의 충돌이나 밀실에서의 담합이나 편법·탈법에 의해 해결되어 온 많은 문제들

이 법정으로 몰려드는 ‘法化(legalization)’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보다 많은 법조인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음

- 사회의 다양화·전문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음
- 법률시장의 개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음

3.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가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법조에 의한 ‘통제와 관리’를 배제함으로써 왜곡된 법조인 수급구조와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구조를 바로잡아야 함
- 보다 많은, 보다 질 높은 법조인을 길러내기 위해 ‘충실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인적·물적·내용적 충실성을 갖추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법학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심의 ‘로스쿨’ 제도는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음

II. 법률안의 내용

1. ‘로스쿨’제도의 ‘외관’

법률안은, 엄격한 설치기준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법학교육의 질의 확

보라고 하는 ‘로스쿨’제도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 대학이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함 (제4, 5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 정원을 교원 1인당 15인의 학생 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12인)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한 전임교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중 5분의 1 이상의 교원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확보하여야 함 (제16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17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제20조)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둠 (제10조)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함 (제22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법조인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됨 (제23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5조)
-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함 (제31조, 제26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설, 설비, 수업 및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제38조)

2. 법조에 의한 통제

법률안은 ‘로스쿨’제도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다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함 (제7조)
-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인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함 (제11조)
- (○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행령안 제6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요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음 (제6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 요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150인) 안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함 (제7조)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며, 그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함 (제26조, 제28조)
-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음 (제35조)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36조)

III. 법률안에 대한 평가

1.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필요함

- 10여년 이상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법조인 선발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제도는 없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임

-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법조인 수요실태에 턱없이 부족한 현행 법조인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학부 전공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다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한 법조인양성기관에서 획일적인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갖춘 다수의 ‘로스쿨’에서 다양한 전공과 견해를 가진 법조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을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을 찬성함

2. 하지만 입법목표를 달성하게 못하는 일부 독소 조항은 반드시 삭제·수정되어야 함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률안에는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으며, 이들 조항들은 국가 차원에서 법률가양성에 과도한 통제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함 따라서 이들 조항들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함

1) 총 입학정원의 통제조항은 문제의 핵심이자 상징

-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며,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법률안 제7조)
 - 이는 다수의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없게 하고, 양성되는 법조인 수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반함
 - 이와같이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도록 하는 제도, 게다가 법조인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음
 -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게 되면, 총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대학이 엄격한 설치기준을 아무리 초과하여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는 사실상 ‘특허(特許)’가 됨
 - 설령,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더라도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한 한시적 제한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제도 시행후 가까운 시일내 총입학정원에 대한 통제를 없애야 함
 - 또 총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으로 열거되는 ‘법조인들의 합의’없이 총 정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와 법학교육자들의 입장은 소외시키고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 결정되게 하는 구조임
- 이런 총 입학정원의 제한은 법률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굳건히 하는 것으로, 이같은 체제하에서는 소수의 법학전문대학

원만이 설립가능하게 됨으로써비록 현재의 사법연수원같은 국가 독점적 법률가 양성 및 선발구조는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독점적 구조가 파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한 기관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전혀 정당성 없음

- 정부가 마련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의해 구성되며,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변호사단체인 ABA(미국법률가협회)가 로스쿨에 대한 인증의 권한을 가지지만, 그것은 미국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게 된 권한이며, 또한 ABA는 인증 부여의 권한만을 가질 뿐 로스쿨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함
- 일본의 경우,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 자체는 평가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법인인 일본변법무연구재단이 문부과학성대신의 인증을 받아 인증평가기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변법무연구재단은 복수의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에 불과함
-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에 평가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 즉 평가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포함한 평가의 의지와 그 활동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여부 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평가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당함

이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고, 총 입학정원의 통제를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요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익단체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평가 작업을 맡기기에 부적절한 단체임

그러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국가가 인적·금전적 지원까지 하는 유일한 법정평가기구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평가인증기관의 지위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작업에 다른 단체나 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통제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없는 것임

- 게다가 정부의 법률안은 그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건의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게는 석명의 의무가 부과되는 점에서 구속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러함에도 주관적 요소가 적지 않게 투입되는 교육과정 및 성과에 대한 사적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사적 기관이 국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일정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임
- 따라서 대한변협에 평가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선협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정부 법률안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평가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관련 조항

-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 ① 교원 1인당 15인의 학생 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② 20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③ 전임교원 중 5분의 1 이상의 교원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 확보해야 함. 또한 시행령 안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인임(법률

안 제16조 등)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 이하,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가교원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설치기준은,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엄격함
-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함.

2004년 4월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68개교 중,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가교원 5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함.

다시 말해,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의 93.4%와 일본 법과대학원의 69%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임

- 한국과 미국·일본 사이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에 넣는다면, 설치기준의 ‘지나친 엄격함’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임

게다가 실무경력자 교원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국내변호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직역의 법률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이것은 법률가 양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를 부과하는 것임

3. 독소조항들을 수정·삭제 않을 경우에는 발생할 문제

1) 새로운 충실한 법학교육을 담보해 낼 수 없음

-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가양성의 특권을 누리는 과점체제

아래에서는 경쟁을 통한 새로운 법학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만 하면 ‘희소가치’를 가지는 변호사라는 특권적 지위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도 교수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임

2) 왜곡된 법조인 수급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음

- 일부 법조인 배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법조에 의한 법조인수의 통제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음
- 단지, 지금까지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라고 하는 ‘출구’에서 통제하던 것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에는 그 총 입학정원이라고 하는 ‘입구’에서 통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임

3)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곧 특권적인 변호사자격 획득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몰려들 것임
- 고시학원은 몇 년씩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낭인’들로 성황을 이룰 것임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자격 부여관련 법률 제정도 시급

- 정부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출하면서, 그것과 일체를 이루어야 할 변호사자격에 관한 법률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대학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해 대학에서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임

- 그 결과 현재로서는 법조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법학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 이런 상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변호사 자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여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왜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V. 결론

- ‘로스쿨’ 제도 도입의 목적이, 현재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법조인 ‘양성’제도로 바꾸고, 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 그런데 현재의 법률안은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학의 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개혁’의 방안으로서 도입하려면, 법률안의 모든 통제적 요소, 특히 총 입학정원의 통제 조항을 반드시 삭제하여 입법화해야 함

그러하지 않고 총입학정원 통제의 조항을 유지한 채 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이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 관련 조항도 반드시 수정하여 입법화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 시행³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04. 4. 26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충원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혼재하고 있다. 이 안들의 공통분모를 보면 ▲법조인의 전문교육을 3년 기간의 대학원 과정에서 시행하여 법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전공을 마친 후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처럼 학부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법조인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학부과정을 ‘사시열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킨다. 정상화된 캠퍼스에서 장래 법조인들은 조급함이 없이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거나 자신의 장래 전문분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학부전공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2)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압축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부과정의 탄실한 기초 위에 강도높은 법률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숫자의, 다양한 학부배경을 가진, 양질의 예비법조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30) 2004년 4월 2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 공청회’에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

그러나, 법조개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싶을 때 법이 국민들을 정의롭고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가’이다.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도 어떻게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손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들이 법원 및 검찰로부터 지혜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그 하나만으로는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1)사법시험 정원제의 폐지를 통해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2)판검사 선발과정의 분리를 통해 ‘전관예우’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변호사자격시험과 연계되어 시행될 때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문제

(1) 현행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폐해

2003년 사법시험 응시자수는 3만 2401명이며, 최종 합격자수는 906명이었다. 응시자 가운데 2.8%가 합격하는 것이다. 그나마 합격자수를 연도별로 증가시켜온 결과다. 한국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신분상승의 기제인 사법시험 합격은 당사자에게 있어 남은 여생을 최고 권력층이자 상류층인 판검사,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때문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아니든 상관없이 신입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인생역전을 시도하는 수많은 응시생들로 북적인다. 이 가운데는 인생의 절정기인 청춘을 다 바치며 사법시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일명 고시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술하다. 사법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주요출제 항목만을 대비해 쪽집게 과외를 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으며, 이공계와 인문계를 막론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사법시험준비에만 몰두해 심지어 법학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교수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든 교육계에서든 법학부는 이미 법률가양성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법시험 합격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또는 응시자)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자신의 원래 전공에는 무관심하고 사법시험에 나올 문제들만을 어떻게든 잘 암기해 시험을 잘 치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이나 변화된 사회상황이 요구하는 법정의에 대해 일별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암기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계에 진출하는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상식이 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어쩌면 당사자들은 평민(!)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선민의식마저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이미 출세의 사다리에 오른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법조계가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 지닌 권력을 향유하거나 남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특권의식으로 뭉친 사람들에게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깃들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 더 나아가 사법서비스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지는 소음일 뿐이며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헛소리일 뿐일 것이다.

또한 판검사로 임용되든 변호사가 되든 간에 사법연수원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비록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한 식구’라는 공감대를 당연하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공감대는 초기 연수원 기수 문화를 넘어 사법의 관료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직역이 나뉘 이후에도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판검사로 재직 한 후 본인의 의지나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비리나 부정한 행위의 적발 등을 이유로 옷을 벗은 후 당연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전관예우라는 특권을 누리 는 것 또한 이러한 기수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에 대해 일반인들이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할진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각종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관행 등은 단순히 당사자들에 대한 지탄뿐 아니라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법시험 점수와 사법연수원 성적을 기초로 해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의 평균연령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이 어린 판검사에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법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정서적 거부감이 생길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지식은 뛰어날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 결과 하급심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승복하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린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됐다는 의식은 잠정적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들만 보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연계돼 있는 사법연수원제도, 즉 법조인력 양성 및 충원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급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법조 양성 충원제도의 개혁에 대해 고려할 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수요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법조인양성제도가 개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의 개혁 목표를 변호사지망생들의 직업교육과정을 강화 또는 국제화하거나 예비지망생들의 학부교육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반쪽의 승리도 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가) 정원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양질의 예비법조인들을 양산해냄으로써 ‘변호사의 자질’을 이유로 더 이상 국가가 나서서 정원제를 통해 변호사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혹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문제를 사법시험 정원제의 폐지와 별개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에 살면서도 자신을 대신해 논증해 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원제를 고수하자는 것은 가난한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구워먹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다. 아무리 변호사들을 출중하게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숫자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현저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양질 교육의 효능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평생별이를 보장해주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고시폐인들의 시도 또한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할 경우, 대체시험의 방법 및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원제를 폐지했을 때에도, 응시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또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시 어떠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질적 담보를 위한 변호사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변호사협회의 활동 강화와 불법 비리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징계권 발동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나) 관검사임용제도의 분리

또한 사법시험 제도가 개혁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동안 다수의 사법연수생 가운데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충원하던 관검사의 신규임용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해야 할지,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소 10년 이상 변호사, 검사, 교수 가운데서 판사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법관 충원 교육을 사법연수원이 담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법조일원화). 이럴 경우 사법연수원의 기능은 축소 전환되어 법관의 재교육, 사법정책기능의 강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판사 임용방식은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특히, 본인이 원할 시 정년까지 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사임용후보자들의 경우, 법무연수원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인사의 투명성과 비정치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일반의 양성을 위해, 현행 사법연수원은 사법·법무연수원으로 분리돼 국가공무원인 관검사들만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판사들과 개인변호사들의 선후배 및 동기관계가 단절되어 ‘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목마른 국민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제도개혁의 열매이다. 또, ‘전관예우’의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재력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유전

무죄 무전유죄’의 폐단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다) 커리큘럼 상의 개혁

현행 사법연수원에서는 현직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답습했던 경직된 개념법학 및 형식법학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이와 같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인들이 법을 마치 자신들만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일반인들의 상식에 근거한 논거들은 법외적이고 법으로 순화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직업법률가들에게 있어 ‘법’과 국민의 ‘상식’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기제중의 하나가 수입법학과 개념법학이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 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원칙들을 마치 하늘이 내린 계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며 자신들만이 천기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가히 원시시대의 제사장들을 보는 듯하다. 이들 제사장들은 국민 다수의 뜻으로 상식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교과서에 나온 원칙들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아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상식과 법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법학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 법학교육의 ‘민주화’ - 준칙주의와 다양성

1999년 법무부의 로스쿨도입안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국립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기존 법률가집단이 신규법률가들의 직업교육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단 하나의 대학원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의 뿌리에는 신규법률가들이 자신들이 획득한 사법활동의 권한을 추후에 기존 사법시스템에 도전하는 데에 이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위법성’의 한 축은 사실 사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극소수의 엘리트집단에게 과점시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법률가집단의 과점 자체가 신규 법률가들의 사법활동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은 경쟁관계일 수 있는 법률가들을 단 하나의 학교를 통해 선후배관계로 묶어 기존 독과점시스템의 인습과 전통에 포섭시킨다. 사법시험 정원제 옹호론자들의 ‘사법연수원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일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절박한 것이다. 모든 신참변호사들을 ‘사법연수원 후배’로 만들

어 놓아야만 기존 독과점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어느 학교든 전문법률교육에 필요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숫자나 전체 정원을 다시 제한하려 든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정원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학풍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역별 국립대나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졸업생들간에 또 다른 선후배관계가 생겨날 수 있고, 이들이 또다시 독과점 고착화에 동원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의지 여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2. 법학교육개혁의 핵심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 설치 방안

(1) 법학교육개혁의 핵심

법학교육개혁의 핵심은 양질의 사법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다. 법률가로서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 법철학, 법사회학 등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법학 및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국제화시대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다양하고 실용적이며 경쟁력있는 사법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전문,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률가에 대한 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2) 변호사자격시험의 시행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한다. 변호사자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합격정원이 따로 없으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무교육을 각 직역별로 실시한다. 검사임용대상자는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판사임용대상자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합

격 후 일정 기간 단독개업을 제한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한다.

(3) 구체적 설치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준

-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 허가(준칙주의)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학교의 법학부는 폐지
- 교수요원 : 전문법학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전임교수를 1대학원당 25명 이상 확보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법률가 등을 겸임, 파견 교수 형태로 임용하도록 함.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12명 이하로 함.
-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당 적어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과 입학 시험

- 입학자격 : 학사 학위 이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단 타지역 및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입학 정원의 일정(40%) 배분 제도화
- 입학시험 : 학부성적 및 경력(사회활동경력 등), 외국어 시험, 추천서, 논술 시험 등
- 입학정원 : 1대학원당 50~200명, 입학정원은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에 따라 변동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과 교육내용

- 수업연한 : 6학기 3년제, 최소이수학점 96학점
- 교육내용 : 1년차에서 기초법학분야(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2~3년차에서는 소송 실습 및 모의 재판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논문 작성을 필수로 함.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해 전문화 되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빈곤 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대책

- 입학사정 : 빈곤, 소외계층, 소수자집단의 법조직역참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충원목표제를 시행.
- 학비 :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장기저리의 학비대여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함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허가 및 입학정원 등을 감독하고, 대학원 교육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 교수, 법률가, 정부, 시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며 공개토록 한다.

(4) 제언

지난 1995, 99년 두 번의 공식적인 논의 이후 2003년 구성된 사개위에서도 법조 양성·충원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의 세월동안 검찰, 법원의 제도적 측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고 있는 반면, 법조 양성·충원제도에 있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합격자수의 증가조차도 2002년 1천명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해에는 대상자 없음을 이유로 900여명을 뽑는 데서 그쳐 도리어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완벽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 하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 이겠지만, 10여년의 지루한 논의 속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일단은 최소한의 합의 지점에서 시험적 운영이라도 해 보는 것이 차선일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서는 절감하면서도 분야별 이해 대립에서 비롯된 저항세력에 막혀 이대로 시간을 끌게 된다면, 당장 2005년의 법률 시장 개방뿐 아니라 이들 국제적 법률전문가들을 내세워 한국시장에 대한 자본 및 경영지배권 잠식에 나설 것이 분명한 다국적 자본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모든 관련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1999년 법무부가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로스쿨 도입안을 발표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판검사 교육과정을 변호사교육과정과 분리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음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발행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행인 | 한 상 희
발행일 | 2007년 1월 25일



참여연대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Tel. 02-723-5300 Fax. 02-723-5055

웹사이트 : <http://peoplepower21.org>

판매가격 2000원